

【논 문】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村落실태와 농민생활*

윤 휘 탁**

┃ 차 례 ┃

- I. 서론
- II. 만주의 개척과 토지의 개방·拂下
- III. 토지소유관계의 형성과 특징
- IV. 村落(屯)의 형성과 농민층의 위상·역할
- V. 농민층의 收支와 負債
- VI. 만주국의 戰時경제정책과 농민생활
- VII. 결론

국문초록

북만주 농촌에서는 새롭게 개방·개척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토지가 극소수의 특권층에게 헐값으로 拂下되었고, 중국 關內에서 이주해온 빈민들은 대부분 토지 소유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로 인해 북만주 농촌에서는 2/3~3/4 이상의 농가가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토지소유의 불균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게다가 개척과정에서 행정치안체계가 완벽되지 못해 土匪나 항일유격대들의 습격을 자주 받았다. 북만주 농촌에서는 그에 대비한 방어시설로서 토벽, 포대, 해자, 자위단, 공동 放牧地 등이 갖추어진 독특한 촌락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극심한 토지소유의 불균등과 치안불안 속에서 북만주의 촌락민들은 공동체적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 이 글은 紙面 관계상 2017.12,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농업경영과 농민층의 변화』(『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므로 위 논문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 한경대학교 교양학부.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혹은 치안을 중시한 만주 식민당국의 통치 하에서 중추역할을 하던 대지주나 대농(부농)들의 촌락민들에 대한 영향력이나 위상이 다른 지역(남만주, 화북)보다 유달리 강했고, 반면에 빈농이나 (반)고농들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그들은 많은 계약과 가난 속에서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만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농산물의 강제 공출, 각종 물자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통제로 농산물, 물가, 임금 등이 폭등했다. 또한 전쟁이 확대되면서 戰費 수요가 급증하자, 일본 식민당국에서는 과도하게 조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이유로 북만주 농민들의 생활은 악화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빈농층은 收支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부채에 시달렸고 농민층 사이의 빈부격차도 극심해졌으며, 농민층의 下降分解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북만주 농촌에서는 ‘개척자’라는 내적 요소와 일본의 ‘식민지’라는 외적 요소가 중첩적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타 지역의 농촌사회와는 다른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주제어: 북만주, 농촌, 토지소유, 촌락, 농촌사회구성, 收支, 농민생활

I. 서론

만주(중국 동북지구)는 역사적·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요·금·청의 만주에서의 崛起와 그에 수반된 동북아질서의 급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전쟁터, 한국독립운동 기지, 괴뢰 만주국의 터전, 국공내전의 분수령, 한국전쟁의 후방기지, 북한정권 등장의 뿌리, 동북아 냉전의 교두보 등의 기능을 했거나 그것들을 촉발한 곳이었다. 만주는 그러한 과정에서 대륙세력 간 혹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사이의 角逐地이자 해양세력이 동아시아 대륙침략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되면서 ‘동아시아 질서에 변동을 초래한 震源地 내지 媒介地’ 역할을 해왔다.¹⁾ 또한 만주는 근대시기 가난·소외·차별·박해 등으로부터 벗어나 더 나은 삶을 모색하던 주변 민족들과 白系 러시아인, 유대인들이 몰려들면서 새롭게 개척된 땅으로서 그들 각자에게 안식처

1) 尹輝鐸, 2001.12, 『邊地에서 內地로: 中國人 移民과 滿洲(國)』, 『中國史研究』 제16집, 40쪽.

및 도피처로 기능하기도 했다.²⁾ 또한 만주에서는 조선, 러시아, 몽골 및 그 밖의 소수민족이 뒤섞여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이데올로기 등 모든 측면에서 대립축을 구성하였고, 게다가 미국과 영국 등의 이해관계까지 얽혀서 여러 민족의 투쟁장으로 간주되어 ‘민족문제의 십자로’, ‘아시아의 발칸’, ‘동방의 알자스 로렌’, ‘극동의 탄약고’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었다.³⁾ 더욱이 만주는 일본제국의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關內 이주민에 의해 이식된 중국적인 전통과 일본적·러시아적인 근대가 복잡하게 어우러지면서 독특한 문화적 混種性을 드러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개척지’였던 만주국 농촌, 특히 개척시기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북만주 농촌에서는 19세기 중반부터 중국 관내로부터 밀려들어온 수많은 중국인들에 의해 개간·개척되고 토지소유관계나 촌락 등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오랜 역사과정을 거쳐 생산관계가 고착된 중국 關內나 조선, 일본, 심지어 南滿洲와는 다른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⁴⁾ 더욱이 만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후, 일본 식민당국의 이민정책에 편승해 수많은 조선인과 일본인 농민들이 만주에 유입되면서 계급(계층)구성이나 민족구성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침략전쟁이 심화되어 만주국의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만주국’ 식민당국의 戰時 통제경제정책, 농산물 공출, 물가 및 생활필수품 가격의 통제, 농업 노동력의 징발 등 다양한 ‘식민지’적 요인이 가중되면서, 북만주의 농업경영, 임노동자의 수급, 임금수준, 경작규모, 농산물 재배방식, 농민생활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게다가 개척 중이었던 북만주의 농촌에서는 치안이 불안정해 土匪들이 창궐하고 항일유격대들이 출몰하면서 촌락의 치안설비나 구조, 생필품이나 농산물의 시장반출, 노동력의 수급 등에서도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만주국 시기 농촌, 특히 북만주에서는 개방·개간 과정에서 초래된

2) 中見立夫 外, 『特輯滿洲とは何だったのか』, 『環: 歴史環境文明』 vol.10 2002 Summer,, 33-182쪽.

3) 山室信一 著, 윤대석 옮김, 2009,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서울: 소명출판사, 序 44쪽.

4)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7, 『農業經營篇: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査料 45-3)(이하에서는 『農業經營報告書』라 약칭함), 新京: 同調査局, 2-6쪽.

‘개척지적 특성’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초래된 ‘식민지적 특성’이 상호 중첩되어 독특한 지역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만주농촌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만주농촌 내부에 초점을 둔 연구와 농촌 외부에 초점을 둔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전자를 만주농촌 내부에 초점을 둔 ‘미시적’ 연구라고 한다면, 후자는 만주농촌이나 농민생활의 변화를 초래한 외부 요인들에 초점을 둔 ‘거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만주농촌 내부 자체보다는 농촌의 변화를 야기한 외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선행연구들로는 조선인이나 일본인의 만주 농업이민사⁵⁾, 일본의 만주 토지 및 농산물 약탈⁶⁾, 그리고 만주국 식민당국의 전시 통제경제정책이 만주농촌(농민)에 미친 영향 등을 다룬 것들⁷⁾이 있다. 그런데 거시적 차원에서 농촌 밖에

-
- 5) 대표적인 연구로는 고승제, 1973, 『韓國移民史研究』, 서울: 장문각; 山田 昭次, 1978, 『滿州移民』, 東京: 新人物往來社; 이훈구, 1979, 『滿洲와 朝鮮人』, 서울: 成進文化社; 柔島節郎, 1979, 『滿洲武裝移民』, 東京: 教育社; 김영, 2004, 『近代 滿洲 벼농사 발달과 移住 朝鮮人』, 서울: 국학자료원; 왕성진 지음, 이은형 옮김, 2006, 『중국 동북지역 이민사: 만주국시기 일본 제국주의의 이민침략』, 서울: GCI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유지원 외, 2011, 『이민과 개발: 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10, 『범월(犯越)과 이산(離散): 만주로 건너간 조선인들』, 인천: 인하대학교출판부; 趙朗·孟月明, 2011.6, 『偽滿時期遼寧日本移民狀況調查與研究』, 『蘭台世界』 2011年 第13期; 孔艷波, 2009.12, 『日本“滿洲移民”政策對中國東北移民活動的影響』, 『日本研究』 2009年 第4期; 馬玉良·孔艷波, 2004.7, 『近年來對日本向中國東北移民問題的研究綜述』, 『東北史地』 2004年 第7期 등이 있다.
- 6) 대표적인 연구로는 손춘일, 1999, 『滿洲國의 在滿韓人에 대한 土地政策 研究』, 서울: 백산자료원; 譚忠艷, 2017.7, 『偽滿時期日本對吉林地區土地資源的掠奪』,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7年 第4期; 王洋洋, 2014.2, 『近代以來東北農業研究綜述』, 『黑龍江史志』 2014年 第4期; 馬偉, 2013.1, 『從東北日本移民看偽滿時期的土地關係及其社會影響』, 『長白學刊』 2013年 第1期; 安曉峰, 2009.10, 『偽滿時期日本在東北的大豆掠奪』, 『傳承』 2009年 第20期; 于春英, 2009.9, 『偽滿時期東北地區糧食生產變遷的研究』, 『中國農史』 2009年 第3期; 朱艷·李國華, 2008.5, 『偽滿時期日本對東北的糧食掠奪』,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8年 第3期; 李淑娟·王鶴, 2006.8, 『日偽統治時期日本對東北棉花的統制與掠奪』, 『黑龍江社會科學』 2006年 第4期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농촌 외부의 관점에서 일본의 식민지적 약탈정책의 실태와 그 잔악상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7) 李淑娟 等, 2014, 『日本殖民主義與東北農民生活(1931~1945年)』,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王一江, 2007.12, 『日偽統治時期勞工徵集對東北農村經濟的影響』, 『黑龍江社會科學』 2007年 第6期. 리수주연(李淑娟) 등의 공동연구는 상술한 농촌실태조사보고서보다는 당시 만주농민들의 인터뷰 내용이나 체험담, 증언 등을 바탕으로 일본의 식민통치가 만주농민의 생활을 어떻게 악화시켰는지에 착안했다. 그렇지만 체험담이나 증언에 근거한 연구결과들

시선을 둔 농촌사회사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농업이민 자체나 식민정책과 농촌 변화 사이의 상관성에 매몰됨으로써, 토지소유관계의 형성배경과 추이, 그에 따른 촌락(屯)의 형성배경과 특징, 촌락 내부에서의 사회구성이나 주거환경, 농민의 계층별 위상이나 역할, 농민 각 계층의 收支·부채·생계비 등의 경제생활실태 등 농촌 내부의 실태분석을 소홀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들이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농촌 내부의 '미시적인' 측면에 분석의 초점을 두려고 한다. 만주농촌 내부의 미시적인 실태를 들여다보는 데 유용한 자료들은 만주국 시기에 작성된 각종 농촌실태 조사보고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보고서들은 만주국 차원에서 수백 명의 조사원들을 장기간 농촌에 파견해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조사해서 산출한 통계들을 기초로 작성되어, 통계의 정확도나 조사지역의 광범위성, 체계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조사보고서들은 대부분 만주국 당시에는 '비밀자료'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었거나 '謄寫本' 형태로 보존되었다. 게다가 이 보고서들 중 일부는 책자 형태로 인쇄·발간되기도 했지만 일반 사회에 공개되지 않고 식민당국의 정책 입안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었다.⁸⁾ 그래서인지 이 조사보고서들을 폭넓게 활용한 선행연구는 별로 없는 실정이다.

다만 상술한 농촌실태조사보고서 중 일부만을 활용해 특정지역이나 사례를 바탕으로 농촌 내부의 농민관계 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있다. 가령 나카마네 와즈(中兼和津次)는 奉天省 梨樹縣만을 대상으로 사회경제구조를 분석했다.⁹⁾ 그런데 이 책은 북만주의 광범위한 지역이 아니라 1개현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연구결과를 북만주 농촌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등치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윤희탁은 위의 보고서들을 기초로 1934

이 그러하듯이, 이 책 역시 일부 사람들이 일부 지역에서 겪은 체험담이나 검증되지 않은 증언 등을 곧바로 만주국 농촌 전반의 보편적인 지역 특성으로 규정해버리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8) 윤희탁, 2017.12,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농업경영과 농민층의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 220쪽.

9) 中兼和津次, 1981, 『舊滿洲農村社會經濟構造の分析』, 東京: アジア政經學會.

~1938년 사이에 濱江省 呼蘭縣 孟家村 孟家區와 北安省 綏化縣 蔡家窩堡의 농민계층이 어떻게 분화되고 있었는지¹⁰⁾를 밝혀냈다. 또한 그는 길림성 延吉縣 陽城村 A屯과 下村屯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이들 촌락에서 잡거하고 있던 중국인과 조선인의 토지소유 및 경작규모와 민족적 위상 등이 어떠한는지¹¹⁾도 분석했다. 게다가 그는 상술한 조사보고서들을 토대로 북만주 농촌의 自·小作경영, 富農경영, 농작물 재배실태 등을 둘러싼 농촌 사회구성의 특징과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던 농민층의 변화추이 등도 밝혔다.¹²⁾ 그런데 윤희탁의 선행연구들은 북만주 촌락의 형성배경과 구조, 그 속에서의 촌락민들의 위상이나 역할, 家計실태 등을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술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서 1934년도에 滿洲國實業部 臨時產業調查局에서 북만주의 濱江省 10개縣 10개 촌락, 龍江省 6개현 7개 촌락 등 총 16개현 소재 17개 촌락(屯)에 거주한 681戶를 조사해 작성한 조사보고서들¹³⁾을 폭넓게 활용했다. 또한 소수 농가를 대상으로 추출한 1934년도의 조사결과를 북만주 농촌의 보편적인 실태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점을 고려해, 조사대상을 1만 85호로 확대한 1935~1936년도의 조사보고서¹⁴⁾도 활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 10) 윤희탁, 1991.1, 「1930年代(1934~38) 北滿洲 農村의 社會構成」, 『東洋史學研究』 제35집.
- 11) 윤희탁, 2001.4, 「滿洲國 農村의 社會像: 複合民族構成體의 視覺에서 본 殖民地 農村의 斷想, 1932~194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7집.
- 12) 윤희탁, 2017.12, 위의 논문.
- 13) 이것들은 康徳元年度(1934)에 조사된 농촌실태 관련 각종 자료들을 정리·集成한 것인데,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查 戶別調查之部』에 정리·집계된 수치를 바탕으로 약간의 가공을 거쳐 다시 집계한 자료와,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에 기록되지 않은 일반 조사자료, 각종 보충자료 등을 보완해서 적절하게 집성한 보고서들이다. 이것들을 조사분야별로 열거하면, 『農家概況篇』, 『小作關係並に慣行篇』, 『農業經營篇』, 『販賣並に購入事情篇』, 『農家の負債並に貸借關係篇』, 『土地關係並に慣行篇』, 『農村社會生活篇』, 『農家諸負擔篇』 등이다.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土地關係並に慣行篇--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產調資料45-8), 新京: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例言, 1쪽].
- 14) 이 보고서는 만주국 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에서 1934년도에 조사한 16개현의 17개 촌락과 아울러 訥河縣의 東大溝와 朝陽堡를 추가해서 각 縣의 技士들로 하여금 만주의 농산물 收穫高 豫상조사를 하게 하면서 조사대상 16개현 44만 1,403호의 2.3%인 1만 85호의 개황을 병행 조사하게 한 결과이다. 이 개황 조사결과는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 土地關係並に慣行篇(補遺)--齊北·濱北兩沿線地方十六

북만주 농촌이 ‘개척지적 요인’들과 ‘식민지적 요인’들이 중첩되어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면서, 북만주 촌락(屯)들의 형성배경과 유형, 치안설비 구조를 비롯해, 그 속에 거주한 농민들의 계층별 위상과 역할, 주거생활, 收支, 부채, 가계실태 등 ‘농촌 내부의 미시적인 측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II. 만주의 개척과 토지의 개방·拂下

북만주에서의 농업개발은 청조가 封禁정책을 포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또한 그것은 官荒(官有地)의 丈放(拂下)과 이민의 증가, 철도건설, 大豆의 세계적인 무역 상품화에 의해 가속화되었으며, 전형적인 새로운 이민 개척지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¹⁵⁾ 북만주는 토지의 개방과 불하가 시작되면서 토지의 자유로운 소유와 개간이 허락되었다. 따라서 토지의 개방이나 불하 당시의 여러 가지 조건이 해당 지역의 토지관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북만주는 개척시기가 상대적으로 짧다보니 농촌에서는 사회관계가 새롭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토지관계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쳤던 토지의 불하 과정을 살펴보면, 일단 불하를 받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攬頭 등의 중개인에 의해 몇 배로 비싸진 불하가격을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하받은 未墾된 황무지를 개척하기 위한 다액의 개간비용이 필요했다. 불하받은 토지를 다른 소작인에게 맡기려면 미간된 황무지에 우물을 파고 집을 짓고 적어도 1년 간 필요한 식량과 사료 등을 마련해야 했다. 또한 토지를 불하받은 지 수년이 지나 토지를 개간하면 일정액의 조세를 납부해야 했다. 따라서 당시 북만주에서 실제로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개간할 자금을 지닌 부유한 농가들이었거나, 특권에 의해 無償

縣(新京: 同調査局資料科)로 간행되었다.

15) 權哲男, 2012, 『偽滿洲國農業經濟分析』,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43쪽.

에 가까울 정도의 싼 가격에 불하를 받은 후 조세를 면제받은 특권적인 부채지주들이었다. 전자의 경우 地價가 개간비용보다 비교적 싼 시기 때문에 대부분 自家 경작면적 이상을 소유한 뒤 자작지 이외의 토지는 소작인이나 雇農들을 점차 불러들여 소작케 했다. 부유한 농가들 중에는 단기간에 유리한 농업경영환경을 이용해 대규모의 토지를 集積한 자들이 있었다. 후자, 즉 만주국 수립 이전인 중화민국 시기의 舊軍閥이나 관료, 상인 등과 같은 특권적인 부채지주들의 경우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¹⁶⁾

이처럼 새롭게 개척된 북만주 농촌에서는 소수의 부유층이나 특권을 지닌 구 군벌·관료·상인 등이 막강한 자금과 특권을 이용해 유리한 조건에서 대규모의 토지를 불하받아 대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토지소유의 편향성이 매우 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북만주 농촌에서 토지분배관계를 형성한 주요한 요인이자 지역적 특성이었다.

東清鐵道 개통의 영향으로 關內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북만주로 유입되면서 소수의 大地主와 수많은 流民들에 의해 새롭게 개척·형성된 북만주 농촌 마을에서는 과거 이들이 거주했던 관내 지역의 사회관계가 거의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즉 북만주 농촌은 개척연대가 짧다보니 개척 당시 많은 토지를 불하받은 대토지 소유자들이, 약간의 우여곡절을 거치기는 했지만, 조사당시까지도 여전히 대토지 소유자로 군림하고 있었다.¹⁷⁾ 당시 북만주는 남만주와 비교해볼 때, 개척시기에 이주해서 대가족으로 구성된 대농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부유한 농가들이 많은 곡창지대’로 불리고 있었다.¹⁸⁾ 1928~1929년경 호황 시기에는 貯蓄會, 銀號 등이 활발하게 설립되었고, 부채지주 등이 상공업에 투자하거나 상인들이 토지에 투자하는 일이 많았으며,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면서 토지를 상실

16)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土地關係并に慣行篇--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産調資料45-8)(이하에서는 『土地關係報告書』라 약칭함), 新京: 同調査局, 80-82쪽.

17) 위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82쪽.

18) 北滿經濟調査所 編, 1940, 『北滿農家經濟調査報告(其ノ二)』(謄寫本)(北滿調査特第三十一號), 新京: 同調査所, 2쪽.

한 소농민의 수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었다.¹⁹⁾

그렇다면 북만주 농촌의 토지소유관계가 어떻게 변천했고 그 원인들²⁰⁾은 무엇이었을까? 먼저 토지의 集積사례로서, 1870년대에 濱江省 巴彥縣에 정착해 大糧棧(양곡 매매상) 겸 雜貨店을 운영한 상인의 경우를 보면, 그는 光緒 22년(1896)부터 民國 20~21년(1931~1932)까지 조금씩 토지를 사들여 황무지 3,240晌²¹⁾과 熟地(경작 가능한 토지) 1,581상을 소유하고 있었다. 몇몇 촌락의 농민들이 그의 토지를 소작하는 소작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그의 소유지는 엄청나게 넓었다. 이 상인 부채지주는 해당 촌락의 소작인들에게 자금을 융통·대부하고 있었다.²²⁾

또 다른 사례로 濱江省 呼蘭縣城에 거주한 T家の 경우, 약 245년 전 旗人이었던 조상이 산둥성에서 만주의 길림성 九台縣, 呼蘭縣으로 이주해 살다가 1924년 呼蘭縣城으로 이주하여 漢文學官·披甲이라는 관리로 근무하면서 북경까지 황제의 獻上品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집안에서는 同治元年(1862) 100晌 정도의 토지를 소유했다가 光緒 11년(1885)부터 32년(1906)까지 집터 24곳, 집(草正床房) 120間, 마굿간(馬架房) 5개, 生荒地 113.35상, 熟地 688.777상을 사들였고, 民國 3년(1914)까지 809.888상의 토지를 구입했으며, 康德 3년(1936)까지는 총 2,692.163상의 토지(주로 숙지)를 집적하고 있었다. 그밖에 安達縣과 綏遠縣 등지에 몇 10方地(450상)가 넘는 荒地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집안에서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소작료를 납부

19)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88쪽.

20) 토지소유관계의 변천에 관해서는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6,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查 戶別調查之部』(第一~四分冊), 新京: 同調查局 및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農村社會生活篇--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產調資料 45-9)(이하에서는 『農村社會生活報告書』라 약칭함), 新京: 同調查局, 69-71쪽 참조.

21) 1晌은 $737.28\text{m}^2=7.43424\text{段}=\text{약 } 7\text{段 } 2\sim 4\text{畝}$ 에 해당한다. 토지의 불하 당시 사용된 1方地는 1滿(支)里 평방으로 45상에 해당하며 1滿(支)里=360弓에 해당한다. 또한 6滿(支)里 평방=36방지=1,620상=1井이다(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122쪽, 174-179쪽; 斯波義信 編著, 2012, 『中國社會經濟史用語解』, 東京: 財團法人東洋文庫, 172쪽;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資料科 編, 1937, 『農業經營續篇--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產調資料45-7)(이하에서는 『農業經營續篇報告書』라 약칭함), 新京: 同調查局, 8쪽].

22)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90-92쪽.

하지 못한 사람들의 저당 잡힌 토지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집적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집안은 호란현의 大方台 부근과 拜泉縣 등지에 총 3천 상 정도의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²³⁾

반면에 대지주나 부농이었다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토지를 상실해 몰락한 사례들도 많았다. 가령 綏化縣 蔡家窩堡屯에서는 아버지가 사망해 자식이 자신의 토지를 숙부에게 맡겼다가 숙부가 그 땅을 매각해버리는 바람에 집조차 없는 雇農으로 전락한 농가(D家, G家), 질병 치료비 이외에 가축 전염병으로 말을 잃고 흉수까지 겹치면서 소유지를 매각한 농가(E家), 자작 겸 지주경영을 하다 不具인 자식이 일찍 사망하자 자가 노동력이 없어진 상황에서 흉년을 맞아 농사를 망쳐 결국 토지를 매각하거나 저당 잡히고(出典) 고농으로 전락을 한 농가(F家), 家長이 아편흡입과 질병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雇農으로 전락해 처의 재봉일·세탁일로 연명해나가거나 처가에 얹혀서 근근이 살아간 농가들(C2家, G家, H家, J家, I家), 토지를 매각하고 수화현 永安鎮에서 役人으로 살아간 농가(L家), 匪賊에게 납치되어 인질 값을 마련하기 위해 혹은 아편흡입 때문에 토지를 매각하고 걸식한 농가(M家), 생활 곤란 때문에 토지를 타인에게 저당 잡히고 몰락해가고 있던 농가(N家) 등이 있었다.²⁴⁾ 또한 油房業이나 잡화업, 신탁업, 자동차업을 하다 실패했거나 비적에게 인질로 잡혀가 거액의 인질대금을 지불하면서, 아니면 집안 식구 다수가 사망해 거액의 장례비용을 지불하면서²⁵⁾ 혹은 수해나 농작물 하락 등으로 몰락해간 대토지 소유자들(祁氏 一家, 程慶 一家)도 있었다.²⁶⁾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었겠지만, 북만주에서는 전반적으로 토지 소

23)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99-118쪽.

24)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92-97쪽.

25) 濱江省 克山縣 第一區 第172號井의 胥有(대지주)의 사례를 들 수 있다(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129쪽).

26) 대토지 소유자들의 구체적인 몰락과정과 실태에 관해서는 濱江省 克山縣 第一區 第172號井에서 잘 드러난다[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6, 『農村實態調查報告書 戶別調查之部』(產調資料 1) 第三分冊, 新京: 同調查局, 331쪽 및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128-129쪽 참조].

유권이 분산되면서 토지 소유자의 평균 토지면적도 줄어들고 있었다. 가령 1903~1934년 시기 북만주 綏化縣 蔡家窩堡屯에 거주한 S家の 경우, 1903년부터 1904년, 1919년, 1934년에 이르면서 토지 소유권자는 각각 1 → 3 → 11 → 14명으로 증가했고, 그 기간에 S가의 소유 토지면적도 400상에서 108.7상으로 줄었다. 그 결과 S가의 1인당 평균 소유지 면적도 같은 시기에 400상 → 133.3상 → 36.3상 → 28.6상 → 7.7상으로 급감하고 있었다.²⁷⁾ 또한 長春縣 劉家屯의 경우에도 1922~1937년 사이 총 소유지 면적은 1922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37년에 58.5로 급감하고 있었고, 1호당 평균 소유지 면적도 100에서 43.4로 급감하고 있었다.²⁸⁾

북만주 농촌에서 토지소유관계에 많은 변화, 특히 소유지 면적의 세분화를 초래한 원인들 중에 하나는 均分相續制度였다. 북만주에서는 長子相續制가 행해지지 않고 남아 자식만을 대상으로 균분상속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가옥·토지·가구·역축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상속자인 남자 자식들 사이에만 均分상속되었다. 심지어 남자 상속자가 어렸을 때부터 도회지로 나가 관리나 상인이 되었더라도 토지나 가옥 등이 모두 균분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대지주는 소지주로, 부농은 다수의 중농이나 빈농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균분상속제도는 농업발달에 장애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의 세분화를 촉진시켜 대토지 소유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부농(대농)경영에 부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했다. 북만주 농촌에서 균분상속제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으로는, 도시에서의 공업이 발달하지 못해 농촌의 과잉인구를 흡수하지 못해 농민의 자식들이 그대로 농촌 내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아울러, 인구 대비 토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토지의 분할이 종래의 농경생활을 크게 해치지 않았던 상황을 지적할 수 있다.

북만주 농촌에서의 分家원인으로는 크게 농촌 내부의 원인과 농촌 외부의 정치적 요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농촌 내부의 분가원인으로는

27) 梶原子治, 1942, 『滿洲に於ける農地集中分散の研究』, 新京: 滿洲事情案內所, 60쪽.

28) 梶原子治, 1942, 위의 책, 56쪽.

대가족 중 일부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토지의 일부를 처분하고 분가한 경우, 가족 중 누군가가 농업 이외의 일을 하게 되어 대가족에서 분가한 경우, 대가족 전부가 농업 이외의 일을 벌였다가 실패해 몰락하면서 대가족을 부양할 수 없어 분가한 경우, 가족 중에 아편에 중독되었거나 낭비가 심해 가산을 탕진하면서 혹은 병든 가족의 치료비를 지불하면서 파산해 대가족이 흩어진 경우²⁹⁾, 그리고 가정불화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에 농촌 외부의 정치적 요인으로는 만주국이 건국된 후 治安肅正工作의 일환으로 ‘集團部落 정책’이 추진되면서 특수지대, 즉 항일유격구에 위치한 농촌이나 산간 마을이 파괴·소각되고 원 거주민들은 식민당국에 의해 치안이 확보된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주되었는데³⁰⁾, 이때 대가족이 한 집에 거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분가한 경우를 들 수 있다.³¹⁾ 그런데 조사당시 북만주 농촌에서는 남만주 지역에 비해 분가가 조금씩 뒤늦게 이루어지고 있었다.³²⁾ 이것은 북만주의 토지분할 속도가 남만주에 비해 늦어서 소유토지의 영세화가 상대적으로 늦추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토지소유관계의 형성과 특징

상술한 것처럼 북만주의 개척과 그 과정에서 추진된 토지의 개방 및 불하 실행은 이후 북만주 농촌 내 각 농민층의 토지소유관계를 규정짓고 그에 수반된 농민생활의 질적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북만주 농촌에서 행해지고 있던 토지의 균분상속제도도 농민층의 토

29)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88-89쪽;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116쪽.

30) 윤취탁, 1995.9, 『滿洲國 時期 日帝의 治安肅正工作이 農民에게 미친 影響과 그 結果』, 『歷史學報』 제147집, 183쪽; 尹輝鐸, 1996, 『日帝下 滿洲國 研究: 滿洲抗日武裝鬪爭과 治安肅正工作』, 서울: 일조각, 262-313쪽.

31) 北滿經濟調查所 編, 1940, 『北滿農家經濟調查報告(其ノ二)』(謄寫本)(北滿調查特第三十一號), 新京: 同調査所, 4쪽.

32)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88-89쪽;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116쪽.

지소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북만주의 개척과 토지의 개방·불하 과정에서 형성된 농촌 내의 토지소유관계는 커다란 변화 없이 만주국 시기 까지 이어져오고 있었다.

북만주 농촌 내 각 농민층의 토지소유관계 및 그에 따른 생활실태에 대해 근대적인 조사기법을 동원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은 만주국이 수립된 이후였다. 즉 1934년부터 만주국 실업부 임시산업조사국에서는 식민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차원에서 북만주 농촌 소재 16개현 17개 촌락(屯) 681호 농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활동을 벌였다. 또한 동 조사국에서는 조사결과와 보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1935~1936년에 조사대상을 넓혀 齊北線(치치하얼 ↔ 北安)과 濱北線(하얼빈 ↔ 北安) 주변의 濱江省 및 龍江省에 소재한, 1934년 조사 때와 동일한 16개현 17개 촌락 이외에 訥河縣 소재 東大溝와 朝陽堡 2개 촌락을 포함시켜 19개 촌락 내의 1만 85호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활동을 벌였다.³³⁾ 이 조사활동들을 계기로 북만주 농촌의 전반적인 실태가 드러난 셈이다.

<표-1> 북만주 농촌의 계층별 熟地 소유현황(1934~1936)

조사 연도	熟地 소유면적		無所有	1响 미만	1~5상	5~20상	20~50상	50~100상	100상 이상	합 계
	실 수	호수(戶) 면적(响)								
1934	실 수	호수(戶) 면적(响)	430 -	24 9.9	59 162.9	72 808.6	55 1,696.2	21 1,320.2	20 4,180.8	681 8,178.6
	1호당 평균면적		-	0.4	3.2	11.2	30.8	62.9	209.0	12.0
	%	호수(戶) 면적	63.2 -	3.5 0.1	8.7 2.0	10.5 10.0	8.1 21.3	3.1 16.6	2.9 50.0	100.0 100.0
1935 ~ 1936	실 수	호수(戶) 면적(响)	7,272 -	43 23.6	815 2,080.4	1,080 10,854.3	550 16,549.1	199 13,266.5	126 24,653.1	10,085 67,427.0

33) 이 조사결과가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7,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 土地關係并に慣行篇(補遺)--齊北・濱北兩沿線地方十六縣』(이하에서는 『土地關係補遺報告書』라 약칭함)(新京: 同調査局資料科)이다.

조사 연도	熟地 소유면적	無所有	1响 미만	1~5상	5~20상	20~50상	50~100상	100상 이상	합 계	
	1호당 평균면적	-	0.5	2.6	10.1	30.1	66.7	195.7	6.7	
	%	호수 면적	72.1 -	0.4 0.03	8.1 3.1	10.7 16.1	5.5 24.5	2.0 19.7	1.2 36.6	100.0 100.0

<출처> 1934년 통계는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3쪽 및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編, 1935, 『農村實態調查報告書 康徳元年度戶別調査之部』, 新京: 同調査局, 『第6表 土地關係表』에서; 1935~1936년 통계는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編, 1937,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 土地關係并に慣行篇(補遺)-齊北·濱北兩沿線地方十六縣』, 新京: 同調査局資料科, 6쪽, 『第一表 土地所有配分關係』에서 작성.

<비고> 실질적 숙지 소유면적에 入典地, 宅地, 채소밭 등은 포함되었지만 出典地, 不可耕地, 廢耕地 등은 제외되었다. 다만 이 통계표에는 촌락 내의 토지만만 아니라 조사농가가 다른 지방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4쪽의 註1, 5쪽의 註2).

상술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시산업조사국에서 작성한 농촌실태조사 보고서들에 의하면, 1934년 조사당시 북만주 17개 촌락의 농가 681호와, 1935~1936년에 조사한 16개현에 소재한 농가 1만 85호가 소유한 실질적인 熟地面적³⁴⁾은 <표-1>에서 보여주듯이, 각각 8,178.6상, 6만 7,427상이었다. 북만주 농민층의 실질적 숙지면적 소유실태와 관련해, 먼저 토지가 전혀 없는 농민 비중을 살펴보면, 1934년 조사에서는 63.2%였고, 1935~1936년 조사에서는 72.1%였다. 1930년대 중반 북만주 농촌에서는 토지가 전혀 없던 농가들이 전체 농가의 2/3~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1상 미만의 숙지를 지닌 半雇農들은 대부분 宅地(거기에 딸린 텃밭을 포함)나 墓地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들을 포함해 5상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영세농들은 두 차례의 조사에서 각각 전체 농가의 12.2%, 8.5%를, 전체 숙지의 2.1%, 3.13%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즉 전체 농가의 3/4(75.5%) 내지 4/5(80.6%)가 토지를

34) 熟地 가운데 타인의 경지를 저당잡은 入典地를 합하고 타인에게 소유지를 저당 잡힌 出典地를 뺀 면적을 의미한다. 이때 '典'이란 토지 소유주가 금전을 빌리고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채권자(典權者)에게 제공했다가 후일 금전을 갚은 뒤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만일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북만주 농촌에서 典價는 地價의 절반에 해당했다. 당시 典관계는 토지 집중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78-79쪽).

소유하지 못했거나 미미한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반해 1934년과 1935~1936년 조사에서 각각 전체 호수의 2.9%, 1.2%였던 100상 이상의 대지주들이 각각 전체 토지의 50%와 36.6%를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에 50~100상의 숙지를 소유한 中地主들(1934년 3.1%, 1935~1936년 2.0%)까지 합친다면³⁵⁾, 6% 이내의 지주들이 각각의 조사에서 전체 토지의 66.6%와 56.3%를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1936년 북만주의 瓊瑋縣 소재 5개屯, 樺川縣 소재 6개屯, 富錦縣 소재 6개屯에 대한 조사에서도 無토지 농가비율은 각각 21.0%, 52.3%, 63.9%였다.³⁶⁾

상술한 조사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1934년 조사에서 808.37상의 토지를 소유한 대지주 1호의 경우 소유토지의 95.3%가 숙지일 정도로 토지소유 규모가 큰 계층일수록 경작 가능한 양호한 토지의 소유비중이 매우 컸으며³⁷⁾, 1935~1936년 조사에서 전체 호수의 1.2%에 불과했던 100상 이상의 대지주가 전체 숙지의 36.6%를 소유한 반면에 72.1%의 농가는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했을 정도로 토지소유의 불균등 현상이 매우 심각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1930년대 중반 북만주 농촌에서는 토지소유관계가 더욱 양극화되어 토지 무소유 계층이 증가하고 있었던 반면에 대토지 소유자 계층의 토지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었다. 극소수의 부농(대농)들이 다수의 (반)고농을 고용해서 부농경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농촌의 저변에는 엄청난 규모의 (반)고농층이 부농층과 對蹠의으로 존재하고 있었다.³⁸⁾ 그리고 개척시기가 오래된 촌락일수록 100상 이상의 대토지 소유계층이나 中土地(20~100상) 소유계층, 즉 ‘開墾型 地主’들의 ‘세분화 경향이 두드러졌고, 도회지에 거주한 不在地主들의 토지집중 경향은 더욱 농후해지고 있었다.³⁹⁾

35) 당시 농촌실태조사 당사자들은 5晌 미만의 토지 소유자를 영세 토지 소유자, 5~20상의 토지 소유자를 소토지 소유자, 20~100상의 토지 소유자를 중토지 소유자, 100상 이상의 토지 소유자를 대토지 소유자로 분류하고 있었다(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4쪽).

36) 張占斌, 1986, 『日偽時期東北無地農戶狀況初探』, 『北方文物』 1986年 第3期, 99쪽.

37)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49-50쪽, 『第二十表 地目別土地利用狀況表(其一)』.

38)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補遺報告書』, 25쪽.

39)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補遺報告書』, 7-10쪽, 30쪽.

당시 북만주 농촌에서의 토지집중 현상이나 토지의 불균등 현상은 만주국이 붕괴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되어 토지개혁을 하기 전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가령 북만주에 속했던 望奎縣의 경우, 10.9%를 차지한 농촌의 지주나 부농이 縣 전체 경지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었고, 69.1%를 차지한 고농이나 빈농, 중농 하층은 겨우 경지면적의 6%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중 토지가 없는 농가는 61.9%를, 집이 없는 농가는 58.6%를, 역축이 없는 농가는 65.4%를 차지하고 있었다.⁴⁰⁾

1930년대 북만주 농촌에서는 각 촌락의 교통여건이 상업고리대 자본과의 접촉 빈도와 그에 따른 상업자본의 침투정도를 좌우하고 있었다. 농산물의 판매, 생활필수품의 구입조건 여부도 부농경영의 우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당시의 조사대상 촌락들은 교통여건이나 개척시기에 따라, 개척연대가 오래되고 교통도 가장 편리한 지역(呼蘭·巴彥·綏化縣=A형), 개척연대가 중간에 해당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靑岡·拜泉·明水縣=B형), 개척연대가 가장 늦은 지역(克山·訥河·富裕縣=C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즉 A형에서는 촌락에 거주한 대지주와 中지주의 세분화 경향이 농후해진 반면에, 토지가 없거나 영세한 토지를 소유한 계층의 비율은 증대되고 있었으며, 도회지에 거주한 부채지주의 토지집중 현상도 가장 두드러졌다. 즉 이러한 유형의 촌락에서는 농민층의 하강분해와 부채지주의 토지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었다. B형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대토지 소유자의 비중이 가장 컸는데, 이것은 교통이 불편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C형에서는 中토지 소유계층과 대토지 소유계층이 우세했고 영세한 토지 소유계층의 비율은 낮았다. 개척시기가 얼마 안 된 이 지역에서는 토지의 분산화가 덜했던 셈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척시기가 오래된 촌락일수록 경작면적의 세분화 경향 및 무경작자의 증가 경향이 두드러져 100상 이상의 부농 경영자나 20~100상의 중농 경작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

40) 望奎縣地方志編纂委員會, 1989, 『望奎縣志』, 望奎: 望奎縣人民政府, 105쪽; 李淑娟, 2005, 『日偽統治時期東北農村社會結構的殖民地化』, 『學習與探索』 2005年 第3期, 139-140쪽.

었다.⁴¹⁾

그렇다면 부채지주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유감스럽게도 1934년과 1935~1936년 농가개황 조사 때는 조사대상 촌락에 거주한 농민만을 조사했기 때문에, 촌락 밖, 특히 도회지(縣城이나 鎮, 대도시)에 주로 거주한 ‘不在地主’들을 조사하지 못했다.⁴²⁾ 그 결과 북만주 농촌의 부채지주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부채지주들이 조사대상 촌락들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조사대상 촌락들의 연혁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도회지에 거주한 부채지주들—주로 舊軍벌·관료·대상인 계층—이 대규모 토지를 불하받았음⁴³⁾을 고려해보면, 당시 북만주 농촌의 在地地主들의 토지소유 규모는 부채지주들의 토지소유 규모보다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 부채지주들이 소유한 토지까지 포함시켜서 토지소유의 분배관계를 살펴본다면, 아마도 북만주 농촌에서의 대지주들(부채지주 포함)의 토지소유 규모나 비중은 상술한 조사결과보다도 훨씬 더 커서 토지소유 분배의 편중성은 더욱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IV. 村落(屯)의 형성과 농민층의 위상·역할

한편 북만주 농촌에서 농민층의 토지소유관계는 촌락의 형성과 그 안에서 농민층의 위상과 역할 등이 결정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었다. 1934년에 조사된 북만주 농촌의 16개현 17개 촌락(屯)들⁴⁴⁾의 형성과정을 개괄하

41)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補遺報告書』, 7-10쪽, 30쪽.

42)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1쪽.

43) 滿洲國軍政部顧問部 編, 1937, 『國內治安對策の研究』, 발행지 미상: 同顧問部, 14쪽; 龜淵龍長, 1915, 『一般民地』(下卷), 大連: 滿鐵調査課, 209쪽.

44) 해당 촌락의 명칭과 조사 호수, 개척시기(조사연도 기준)를 열거하면, 濱江省의 海倫縣 四甲五井·五甲四井 後三馬架屯(52호, 34년 전), 望奎縣 惠字四井 後四井屯(38호, 35년 전), 綏化縣 第三區 蔡家窩堡屯(45호, 62년 전), 慶城縣 第四區 張家燒鍋屯(67호, 74년 전), 呼蘭縣 第四區 孟家屯(51호, 약 150년 전), 巴彥縣 第二保 龍泉鎮 西太平莊屯(42호, 73년 전), 青岡縣 第四區 董家店屯(30호, 39년 전), 蘭西縣 第五區 石家園子屯(42호, 65년 전), 安達縣 第三

면, 이미 분화된 가족이 토지의 大開放 때 새로 취득한 각자의 토지를 개간하고 경작하기 위해 동일한 장소에 모여 생활하면서, 하나의 屯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2~3개의 屯이 모여 자연촌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연촌락이 북만주 농촌사회생활의 단위를 이루고 있었다. 1934년에 681호의 농가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촌락민 중에 同鄉 및 知人관계에 의존했거나 혈연적인 친척관계에 의존해서 해당 촌락에 온 사람들은 각각 75호(11%)⁴⁵⁾, 158호(23.2%)⁴⁶⁾에 불과했다. 나머지 2/3의 촌락민들은 자신들이 취득한 사유지가 동일한 장소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에 함께 모여 살고 있었다. 그렇다보니 촌락민의 유동이나 정착은 모두 토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북만주 농촌의 촌락(屯)들은 토지를 매개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셈이다. 당시 촌락을 형성한 家는 3세대, 4세대가 동거하는 형태의 가족제도를 기초로 했기 때문에 혈연이라는 사회적 유대가 작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촌락의 명칭은 이웃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굳어져 통용되었다.⁴⁷⁾

북만주 농촌의 촌락(屯)들은 대부분 관내에서 넘어온 이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1934년도의 조사대상 농가 681호의 출신지 상황을 보면, 산동성 출신이 70.6%(481호), 하북성 출신이 9%(61호), 만주 출신이 8.2%(56호), 기타 지역이 4%(27호), 불명이 8.2%(56호)였다.⁴⁸⁾ 심지어 安達縣 正四家子屯과 呼蘭縣 孟家屯은 산동성 출신이 각각 95.8%, 92.1%를 차지하고 있었다. 북만주로 이주한 이민자들 대다수는 산동성 출신이었던 셈이다.⁴⁹⁾

區 正四家子屯(24호, 28년 전), 肇州縣 安字第十九井 張家大園子屯(62호, 29년 전), 그리고 龍江省의 富裕縣 第三區 七家戶屯(19호, 16년 전) 및 第四區 李地房子屯(13호, 5년 전), 訥河縣 第一區 孫家井(34호, 10년 전), 拜泉縣 利字四甲五井 王殿元屯(33호, 28년 전), 明水縣 七甲五井 郭殿仁屯(43호, 26년 전), 克山縣 第一區 政字第七十二號井(52호, 16~20년 전), 龍鎮縣 烏魚鎮 段農字頭井 幫辨屯(34호, 23년 전) 등이었다. 조사농가 및 호수는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補遺報告書』, 例言, 2-3쪽에서; 개척시기는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補遺報告書』, 3쪽에서 인용.

45)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44쪽, 「第七表 同鄉知人關係を頼りて來住せる戶數」.

46)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60쪽, 「第十二表 親戚關係を頼りて來住せる戶數」.

47)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8-9쪽.

48) 滿洲事情案內所 編, 1943, 『滿洲の農民生活—農村實態調査報告—』, 新京: 滿洲事情案內所, 47쪽, 「第八表 農家出身地別戶數」.

이민자들은 대부분 만주로 넘어와 돈을 번 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개척시기가 150년가량 된 呼蘭縣 孟家屯에서조차 50년 이상 거주한 농가가 47호 중에 23%(11호)에 불과했고, 개척시기가 60년 이상 된 綏化縣, 慶城縣, 巴彥縣, 蘭西縣의 조사대상 촌락(屯)에서도 50년 이상 거주한 농가는 별로 없었다. 이것은 당시 농가들이 상당한 유동성을 띠고 있었고 해당 촌락에 대한 향토의식이나 애향심, 유대감이 약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거주하던 촌락에 대한 의식을 어렴풋이 갖고 있었지만 촌락을 '향토'로 여기는 고향의식은 없었다. 그들은 토지를 중심으로 엮인 촌락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과 자치를 통해 자연재해, 野獸나 土匪들의 습격에 대비하거나 방어하면서 공동체적 생존을 유지해나가고 있었다.⁵⁰⁾ 당시 북만주의 새로운 개척지로 이주한 농민들은 국가의 보호나 지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자연적인 위협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한 자치적 집단생활과 밀집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촌락들의 분포를 보면, 큰 촌락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작은 촌락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는데, 촌락과 촌락 사이의 거리는 대개 3~5滿里였다.⁵¹⁾ 1935~36년에 조사한 230개 촌락을 대상으로 촌락 하나의 평균규모를 산출해보면, 호수는 43.7호, 농민 수는 293.7인, 실질적인 숙지 소유면적은 293.1상, 경작면적은 378.4상, 대가축(말, 소, 노새, 당나귀) 수는 78.2두였다. 조사당시 각 촌락의 개척시기는, 呼蘭縣 孟家屯의 약 150년을 예외로 하면, 4~74년 사이로⁵²⁾ 촌락들의 형성시기는 비교적 짧았다.

북만주의 촌락에서는 의화단전쟁, 러일전쟁, 군벌내전, 만주사변 등 수많은 전쟁들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청조, 중화민국, 만주국 등 세 나라를 경험하고 있었다. 북만주 농민들은 각종 전쟁이나 국가의 변천을

49)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48쪽.

50) 앞의 보고서, 『滿洲の農民生活—農村實態調査報告—』, 25쪽;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52-56쪽.

51)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26-27쪽.

52)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16쪽 및 17쪽, 『第三表 屯の大きさ(縣別—屯當平均)』.

겪을 때마다 다양한 官治組織에 편재되었지만, 이들 조직으로부터 근대적인 정치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훈련을 받거나 치안상의 보호를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렇다보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집단적 치안을 중시하면서 자치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치공동체 속에서는 土豪劣紳이 專斷하거나 봉건적인 계급지배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북만주 농촌에는 自衛團이 조직되어 있었는데, 농민 자신이 교대로 그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동으로 비용을 내어 직업적 자위단을 편성해 치안을 유지한 곳도 있었다.⁵³⁾

당시 북만주에는 개혁에 성공해 대토지를 바탕으로 20~40여 명의 대가족을 형성한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대지주, 大農경영자, 재산가,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었다.⁵⁴⁾ 1934년 만주국에서 保甲制度⁵⁵⁾가 실시되어 확립되기 전까지, 북만주 농촌에는 鄉長, 百戶長, 十戶長 등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이들이 징세 독촉, 인력 징발 등의 역할을 하면서, 절대적인 힘을 지닌 경찰서장 등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었다. 그들은 縣公安局 관리나 경찰서장 등의 초대, 뇌물 제공 등을 통해 그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⁵⁶⁾

그런데 만주국이 건립된 후 保甲제도가 시행되면서 土匪나 항일세력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었고 치안 제일주의가 주창되고 있었다. 당시 촌락에서는 도박과 아편흡입 습관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소작계약을 맺을 때, 소작인이 항일세력과 내통하는 행위(通匪), 절도, 도박, 아편흡입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반드시 보증인이 책임지도록 했다.

53)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134-141쪽, 151-158쪽; 앞의 보고서, 『滿洲の農民生活—農村實態調査報告—』, 141-143쪽.

54) 北滿經濟調査所 編, 1940, 『北滿農家經濟調査報告(其ノ二)』(謄寫本)(北滿調査特第三十一號), 新京: 同調査所, 2쪽.

55) 만주국에서는 국가사회생활의 향상발전과 王道政治의 실현, 치안유지, 국가관념 및 自治觀念의 양성이라는 3대 항목의 실현을 보갑제도의 거시적인 목표로 삼았다[滿洲國治安部警務司 編, 1942, 『滿洲國警察史』上卷, 新京: 滿洲國治安部警務司, 352쪽 및 滿洲國民政部警務司 編, 1935, 『保甲制度特別工作概況』, 新京: 滿洲國民政部警務司, 120쪽]. 만주국의 보갑제도에 관해서는 윤취탁, 1996, 앞의 책, 197-261쪽을 참조.

56)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134-141쪽, 151-158쪽.

조사대상 촌락에서도 강도, 절도, 도박 등의 범죄가 많았다.⁵⁷⁾ 대체로 대지주나 부농 등의 유력자들이 甲長과 牌長을 맡아 入屯者의 감시, 둔내 불량분자의 적발, 移動者의 보고, 村費의 징수, 부역 징발·알선, 무기회수, 戶口 조사, 연락명령의 전달 역할을 했는데, 그로 인해 촌락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도 더욱 커졌다.⁵⁸⁾

각 농가들은 독립된 개별 농가로서가 아니라, 촌락생활의 일원으로서 소작관계, 고용관계, 가옥의 임대차관계, 부채관계, 공동의 방위, 목초지의 공동이용, 맷돌(碾子)·방아·풍선기(扇車子) 등 농기구의 이용, 토지매매에서 촌락 거주자에 대한 先買權 인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 얽혀 있었다. 그렇다보니 촌락 안에서 소작관계, 고용관계, 가옥의 임대차관계가 맺어졌으며, 공동의 치안방비, 牧養地의 공동이용, 공동의 가축방목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소작관계, 고용관계에서는 자유인과 자유인 사이의 계약형태라기보다는 대단히 봉건적이고 예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특히 식량결핍 시기에 식량을 대여해줄 수 있는 부농들은 빈농이나 雇農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에, 이들 촌락은 부농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⁵⁹⁾ 그 결과 촌락 내부에서는 소수의 부유한 농가가 유력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둔의 생활 역시 그들을 중심으로 영위되고 있었다. 심지어 어느 둔에서는 豪農이 둔의 왕처럼 군림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토비 등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촌락의 치안이 악화되면, 빈궁한 농가들은 커대한 담벽을 둘러친 호농의 집으로 피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⁶⁰⁾ 당시 촌락 내에서는 빈궁한 농가가 유력자의 신용을 상실해 돈을 떠나야 하는 상황도 많았다.⁶¹⁾ 이처럼 북만주의 촌락(둔) 내에서는 빈궁한 촌락(둔)민들이 대지주

57) 앞의 보고서, 『滿洲의 農民生活－農村實態調查報告－』, 181-185쪽.

58)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1971, 『滿洲國史』(各論) 上卷, 東京: 滿蒙同胞援護會, 521-522쪽; 永富直明, 1936.8, 『保甲制度論(二)』, 『民政部調査月報』 제1권 제8호, 43쪽;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134-141쪽, 151-158쪽; 앞의 보고서, 『滿洲의 農民生活－農村實態調查報告－』, 148-150쪽.

59)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8-9쪽; 앞의 보고서, 『滿洲의 農民生活－農村實態調查報告－』, 139쪽.

60)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145-147쪽.

나 부농(대농)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었던 셈이다.

둔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은 유력자가 개입해 해결하곤 했지만⁶²⁾,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는 대부분 경찰서장이나 縣公署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농민들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구분해서 생각하지를 못했고 소송까지 가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 소송은 설득이나 훈계 등의 행정처분으로 해결되었고 정식의 사법 처분으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았다. 사법적 소송까지 가서 자신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었던 계층은 부농이나, 官과 연계된 일부 유력자들에 한정되어 있었다.⁶³⁾

상술한 치안문제나 생활여건은 농민들의 주거생활도 제약하고 있었다. 즉 농민들은 가옥이나 택지를 아무런 곳이나 마음대로 정해서 지을 수가 없었고 일정한 관행에 따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북만주의 촌락들은 정연하면서도 전형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북만주 농촌의 부유한 촌락들이나 대농의 집들은 대부분 토벽 등의 치안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⁶⁴⁾ 치안설비는 경제적 여건이나 구성원들의 특징에 따라 달랐다.

먼저 城郭式 密居村落의 형태를 보면, 肇州縣 張家大圍子屯, 安達縣 正四家子屯, 富裕縣 七家戶屯에서는 匪難, 즉 土匪의 침입과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안을 고려하여 모든 마을이 토벽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土壁에는 砲臺가 만들어져 사방에 銃眼이 갖추어져 있었다. 어느 大農의 집은 주위가 이중의 토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토벽의 요소에 6개의 포대가 설치되었고, 심지어 토벽 밖에 다시 해자가 갖추어지기도 했다.⁶⁵⁾

성곽식 밀거촌락의 대표적 형태인 조주현 장가대위자둔의 촌락구조를 살펴보면, 촌락 주위에는 ‘성벽’이라고 불리던 담벽(圍壁=圍子)이 둘러쳐져 있었는데, 담벽의 동서 길이는 330m, 남북 길이는 252m, 높이는 3~5m에 달할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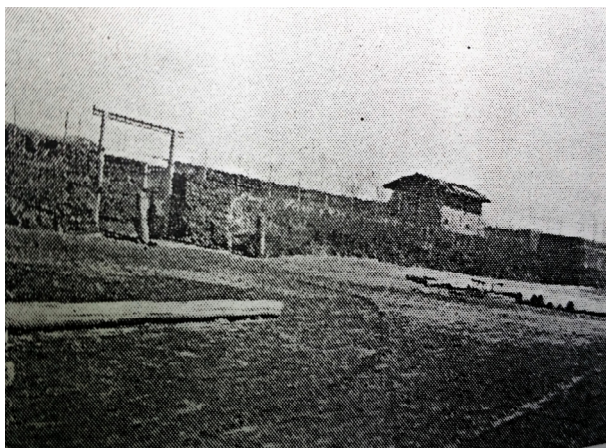
61)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145-147쪽.

62)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145-147쪽.

63) 앞의 보고서, 『滿洲の農民生活—農村實態調查報告—』, 180쪽.

64) 앞의 보고서, 『北滿農家經濟調查報告(其ノ二)』, 2쪽.

65) 앞의 보고서, 『滿洲の農民生活—農村實態調查報告—』, 25쪽; 앞의 보고서, 『農業經營續編報告書』, 66-68쪽.



도로 대규모였다. 담벽의 사방 귀퉁이를 비롯해서 동쪽과 서쪽의 출입문 앞에는 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토벽 밖에는 깊은 해자가 파져 있어서 마치 촌락이 큰 바다 위에 떠

있는 전투함을 연상시키고 있었다. 출입문에는 촌락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自衛團이나 촌락 공동의 비용으로 고용한 전문적인 보초가 번을 썼고 일몰 후에는 견고하게 문이 닫혀 누구라도 출입할 수가 없었다. 담벽 안에 있는 부농들은 부농들대로, 빈농들은 빈농들대로 각자 담벽을 둘러치고 밀집해서 살고 있었다. 또한 담벽 내부에는 택지나 脫穀場이 조성되어 있었고 동문부터 서문까지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었다. 촌락의 북쪽에는 버드나무나 미루나무로 林地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촌락의 미관을 좋게 만들었고 防風작용을 한 동시에 그 목재가 가옥의 건축이나 농기구 수리용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촌락의 남쪽에는 牧養地 혹은 방목지가 조성되어 촌락민들의 방목이나 採土, 연료용 풀의 채집 등을 위해 활용되고 있었다. 목양지는 약 25상 정도였는데, 이 촌락이 개척될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⁶⁶⁾

북만주 농촌에는 縱列式 密居村落의 형태도 있었는데, 그러한 유형의 촌락이 拜泉縣 王殿元屯, 海倫縣 後三馬架屯, 龍鎮縣 幫辨屯 등이었다. 이 촌락들에는 다수의 농가가 도로를 따라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었고 하나의 택지 가운데에 여러 채의 집이 모여서 마치 여러 개의 고리가 사슬 형태처럼 길게 늘어서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포대가 갖추어진 大農(富農) 인근에

66)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222-225쪽;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132쪽.

는 토벽조차 없는 많은 소농이나 雇農의 집들이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소농이나 고농들은 匪賊에게 약탈당할 만한 물건을 갖고 있지 못해서 약탈당할 걱정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砲火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⁶⁷⁾ 용진현 방변둔에서는 豪農인 李家를 중심으로 촌락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집만이 이중의 철조망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나머지 빈농들의 집은 황야에 무방비상태로 지어져 있었다. 蘭西縣 石家圍子에는 촌락 전체를 둘러친 담벽이 없었고 豪農들의 집만이 담벽으로 둘러쳐진 채 줄지어 있었다. 靑岡縣 董家店에서는 공동으로 담벽을 둘러칠 자금이 없어서 빈농들은 완전히 무방비상태로 살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만주사변 직후 이러한 촌락들은 비적들로부터 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⁶⁸⁾ 부농들만이 치안방위시설을 갖추고 있을 경우 빈농들은 유사시 부농 집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치안환경 역시 해당 촌락에서 대농(부농)들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⁶⁹⁾

그밖에 明水縣 郭殿仁屯, 望奎縣 後四井前屯, 綏化縣 六排屯처럼 疏開式 聚落형태를 취한 촌락들도 있었다. 이것은 몇 호의 농가들이 먼저 집단을 형성한 뒤 다수의 小촌락들이 모여들면서 하나의 屯을 형성한 경우이다. 그밖에 訥河縣 孫家井의 3촌락, 富裕縣 李地房子처럼 형성시기가 짧아서 하나의 일정한 屯 형태를 취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⁷⁰⁾

이처럼 북만주 농촌에서의 치안문제에 따른 촌락의 형성과 구조, 그 과정에서 형성된 다양한 관계, 촌락민들의 계층별 위상이나 영향력, 촌락의 질서 등은 북만주 농촌이 지니고 있던 지역적 특성, 즉 ‘북만주 = 개척지, 식민지’라는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당시까지도 북만주 농촌은 여전히 개척 중이라서 土匪나 항일세력의 습격에 대비한 치안기능이 확고하지 못했고 치안질서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했다. 일본의 만주

67) 앞의 보고서, 『農業經營續篇報告書』, 66-68쪽;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31-34쪽; 앞의 보고서, 『滿洲の農民生活－農村實態調査報告－』, 27-29쪽.

68)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3-7쪽; 앞의 보고서, 『土地關係報告書』, 222-225쪽.

69) 앞의 보고서, 『滿洲の農民生活－農村實態調査報告－』, 139쪽.

70)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36-38쪽.

점령과 만주국 수립에 대한 현지인들의 민족적 저항도 지속되고 있었다. 토비의 습격에 따른 치안의 불안정성은 개척 때부터 치안조직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북만주 농촌의 ‘개척지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고, 항일세력의 습격 등에 따른 치안문제는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북만주 농촌의 ‘식민지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상술한 촌락의 여건 속에서 북만주 농민들은 어떠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을까? 당시 북만주 농가들의 건물은 빈부 차이, 경작 규모, 이용방법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1934년 조사에 의하면, 전체 건물 가운데 주거용 가옥이 80.3%, 농소가 19.7%를 차지하고 있었고, 草房(초가집)이 73%, 平房(지붕이 평평한 가옥)이 25.4%, 瓦房(기와집)과 마굿간이 1.6%를 차지하고 있었다.⁷¹⁾ 가옥의 질적 수준이나 건축비는 대체로 와방 > 초방 > 평방 순이었으며, 집은 남향으로 지어졌다.

<표-2> 경영양식별 · 규모별 1호당 평균 가옥 賃借현황(1934)

구분	地主	地主兼 自作	自作	自作兼 小作	小作	雇農	雜業者	합계
실질 소유	7.2	13.5	4.8	6.4	0.4	0.1	0.5	2.8
自家	1.7	4.4	2.6	3.1	0.2	0.1	0.3	1.1
賃貸	5.1	6.4	1.3	1.5	0.1	-	0.2	1.2
賃借	0.6	0.4	0.5	1.1	2.3	1.4	1.0	1.3

<출전>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農業經營篇-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産調資料45-3), 新京: 同調査局, 73-74쪽, 『第二十四表 經營様式規模別建物賃借概況』(1戶當り平均).

부농(대농)은 주거용 가옥 이외에 별도로 농소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수확물, 농기구, 碾子, 방아(磨) 등을 설치했지만, 소농은 주거용 집 안의 공간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창고를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농 등은 주거용 집 이외에 어떠한 건물도 없었다.⁷²⁾ 이러한 상황은 경영양식별 및 경영규모

71) 앞의 보고서, 『農業經營續編報告書』, 66쪽의 『第二十二表 建物の種類』; 앞의 보고서, 『農村社會生活報告書』, 34쪽.

72)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7, 『農業經營篇-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查報告書』(産調資

별로 각 농가 1호당 평균 가옥의 대차현황(<표-2> 참조)에서 잘 드러난다. 즉 지주는 평균 7.2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5.1채를 임대하고 있었다. 경영규모가 큰 지주 겸 자작농은 13.5채를 소유하고 6.4채를 임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고용된 다수의 노동자들은 좁은 공간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었다. 반면에 소작농은 0.4채밖에 없어서 별도로 2.3채를 임차하고 있었고, 고농은 0.1채밖에 없어서 1.4채를 임차하고 있었다. 북만주 농촌에서 가옥을 임대하는 쪽은 지주나 지주 겸 자작농이었고 임차하는 쪽은 소작농이나 고농이었다. 북만주의 주거가옥(草房·平房·瓦房) 1채당 임차료는 縣別로 달랐는데, 최저가 3.97圓(靑岡縣)이었고 최고가 12.0圓(富裕縣)이었다.⁷³⁾ 가옥 임차료는 절반가량이 소작지에 부가되어 賃借되고 있었다.

V. 농민층의 收支와 負債

그렇다면 북만주 농민들의 경제생활은 어떠했을까? 이것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는 수입과 지출 그리고 부채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부채는 각 농민층의 농업경영실태,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농산물 가격, 노임, 일본 식민당국의 각종 경제정책, 만주국을 둘러싼 국제 경제환경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⁷⁴⁾

북만주 농민들의 1호당 평균 수입현황(<표-3> 참조)을 살펴보면, 지주층은 총수입(9,135.75원)의 4.2%(380원)를, 부농층은 52.7%(4,813원)를, 중농 상층은 23.1%(2,109원)를, 중농 하층은 11.2%(1,021원)를, 빈농층은 4.6%(424원)를, 반고농층은 1.8%(163원)를, 고농층은 1.2%(107원)를, 잡업자는 1.3%(115원)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 농가호수의 2.5%에 불과한 부농층이 전체수입의 52.7%

料 45-3)이하에서는 『農業經營報告書』라 약칭함, 新京: 同調査局, 65쪽.

73) 앞의 보고서, 『農業經營報告書』, 79쪽, 『第二十六表 調査屯別一間房子當り平均家賃表』 및 80쪽.

74) 그런데 이 부분은 본 발표 紙面이 부족한 관계로 다른 지면에 발표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윤휘탁, 2017.12,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농업경영과 농민층의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 217-263쪽을 참조하기 바람.

를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농가호수의 57.5%를 차지한 반고농층과 고농층은 전체수입에서 3%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1930년대 북만주 농촌에서의 수입상의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3> 농민의 계층별 1호당 평균 收入현황(1934)(단위: 戶, 圓, %)

구분	호 수	經常收入						臨時收入					수입 합계 (%)	현금 수입 (%)		
		영농	축산물	소작료	노임	부업	雜수입	계	토지 매각	가축 매각	차입금	회수금			기타	계
지주	46 (6.8)	40.2 (14.3)	12.37 (4.4)	190.08 (67.2)	12.57 (4.4)	9.79 (3.5)	17.61 (6.2)	282.62 (100.0)	16.84 (17.1)	1.60 (1.6)	46.79 (47.6)	21.18 (21.6)	11.87 (12.1)	98.28 (100.0)	380.90 (4.2)	229.40 (5.7)
부농	17 (2.5)	3,162.08 (76.8)	127.3 (3.1)	624.97 (15.0)	0.75 (-)	97.05 (2.3)	159.66 (3.8)	4,171.81 (100.0)	62.50 (9.7)	24.00 (5.3)	355.31 (55.4)	187.89 (29.3)	1.89 (0.3)	641.59 (100.0)	4,813.40 (52.7)	2,274.46 (56.2)
중농상층	21 (3.1)	1,659.64 (90.9)	61.11 (3.3)	33.61 (1.8)	0.67 (-)	31.53 (1.7)	41.14 (2.3)	1,827.70 (100.0)	-	-	262.26 (93.1)	13.45 (4.8)	6.05 (2.1)	281.76 (100.0)	2,109.46 (23.1)	782.39 (19.3)
중농하층	77 (11.3)	750.98 (85.6)	46.35 (5.3)	39.60 (4.5)	2.83 (0.3)	13.78 (1.6)	23.94 (2.7)	877.48 (100.0)	3.25 (2.3)	15.54 (10.8)	105.62 (73.7)	8.77 (6.1)	10.18 (7.1)	143.36 (100.0)	1,021.24 (11.2)	330.23 (8.2)
빈농	93 (13.7)	284.54 (81.6)	11.71 (3.4)	26.45 (7.6)	7.22 (2.0)	5.96 (1.7)	12.85 (3.7)	348.73 (100.0)	10.09 (13.4)	2.40 (3.2)	51.94 (68.9)	5.69 (7.5)	5.29 (7.0)	75.41 (100.0)	424.14 (4.6)	163.67 (4.0)
半雇農	157 (23.1)	63.92 (50.5)	9.19 (7.2)	1.75 (1.4)	37.35 (29.4)	5.12 (4.0)	9.57 (7.5)	126.90 (100.0)	7.27 (19.9)	-	16.24 (44.5)	3.55 (9.7)	9.40 (25.9)	36.46 (100.0)	163.26 (1.8)	92.59 (2.3)
雇農	234 (34.4)	7.93 (8.5)	3.42 (3.7)	-	70.57 (76.0)	2.87 (3.1)	8.11 (8.7)	92.90 (100.0)	-	-	9.04 (61.2)	0.48 (3.2)	5.26 (35.6)	14.78 (100.0)	107.68 (1.2)	73.66 (1.8)
雜業者	36 (5.3)	3.6 (4.1)	3.48 (4.1)	-	8.71 (10.2)	9.74 (11.4)	59.96 (70.2)	85.49 (100.0)	4.27 (14.1)	-	13.08 (43.3)	4.43 (14.7)	8.40 (27.9)	30.18 (100.0)	115.67 (1.3)	102.85 (2.5)

<출전> 경상 및 임시수입은 滿洲國實業部産業調査局 編, 1937, 『租稅公課篇--北滿·南滿農村實態調査報告書-』(이하에서는 『租稅公課報告書』라 약칭함), 新京: 同調査局, 393-394쪽, 『第五十表 農家群別收入表』(一戶當り平均) A 總評價之部에서; 현금수입은 395-396쪽, 『第五十一表 農家群別收入表』(一戶當り平均) B 現金之部에서 산출 인용.

<비고> (*)은 각 계층이 전체수입 및 현금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을 의미한다.地主群에는 대지주 90상 이상, 중지주 40~90상, 소지주 10~40상, 극소지주 10상 미만이고, 富農群에는 지주 겸 자작 100상 이상, 자작 100상 이상, 자작 겸 소작 100상 이상이 속하며, 中農 上層群에는 자작 50~100상, 자작 겸 소작 50~100상, 소작 70상 이상이, 中農 下層群에는 지주 겸 자작 40~100상, 자작 20~50상, 자작 겸 소작 20~50상, 소작 30~70상이, 貧農群에는 지주 겸 자작 10~40상, 자작 5~20상, 자작 겸 소작 5~20상, 소작 7~30상이, 半雇農群에는 지주 겸 자작 10상 미만, 자작 2~5상, 자작 겸 소작 2~5상, 소작 3~7상, 자작 2상 미만, 소작 3상 미만이 속한다. 雇農群에는 定雇, 不定雇(75)가 속한다(위의 보고서, 『租稅公課報告書』, 393-394쪽, 『第五十表 農家群別收入表』).

75) 定雇는 농가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한 임노동자를, 不定雇는 필요할 때 임시로 고용한 임노동자를 가리킨다(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7, 『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 雇備關係并に慣行篇』(産調資料 45-5)(이하에서는 『雇備關係報告書』라 약칭함), 新京: 同調査局, 1쪽.

북만주 농민의 계층별 1호당 평균 수입구조(표3) 참조를 살펴보면, 지주의 경우, 경상수입의 주 수입원은 소작료였고 임시수입은 주로 차입금, 회수금, 토지매각대금 등이었다. 부농의 경우, 경상수입의 2/3 이상이 영농수입이었고 일부가 소작료였다. 임시수입은 절반 이상이 차입금이었고 그 외에 회수금, 토지와 대가축의 매각대금 등이 차지하고 있었다. 중농 상하층과 빈농층 역시 영농수입이 대부분이었고 차입금이 임시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반고농층의 경우 영농수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 노임수입이 29.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차입금도 44.5%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농층의 경우, 경상수입의 2/3 이상이 노임수입이었고 그것이 전체수입의 65.5%를 차지하고 있었다. 잡업자의 경우, 영농 이외의 잡업수입이 경상수입의 70%를 차지하고 있었고 차입금(부채)은 전체수입의 10%를 넘고 있었다. 여기에서 반고농층의 부채비율이 높았으며, 고농층에서는 수입 중 2/3가 노임수입이었음을 알 수 있다. 1호당 평균 현금수입만을 보면, 지주나 부농층은 상대적으로 많은 현금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상공업 등에 종사한 잡업자층이나 노임이 주 수입원인 반고농층, 고농층 역시 현금수입이 많았다.

농민층별 1호당 평균 수입규모를 보면, 부농층의 총수입은 지주층의 12.6배, 중농 상층의 2.3배, 중농 하층의 4.7배, 빈농층의 11.3배, 반고농층의 29.5배, 고농층의 44.7배, 잡업자층의 41.6배에 달했다. 더욱이 현금수입 현황을 보면, 부농층은 지주층보다 9.9배, 중농 상층보다 2.9배, 중농 하층보다 6.9배, 빈농층보다 13.9배, 반고농층보다 24.6배, 고농층보다 30.9배, 잡업자층보다 22.1배에 달했다. 현금으로 노임을 받거나 잡업에 종사한 잡업자층을 제외하면, 부농층은 농경에 종사한 여타 농민층보다 전체수입 대비 현금수입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다. 이것은 1930년대 북만주 농촌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표-4> 농민층별 1호당 평균 支出현황(1934)(단위: 戶, 圓, %)

구분	經常支出										臨時支出		
	소작료	조세	農具 구입	사료	비료	판매비	노임	생활비	연료	雜지출	소계	토지 구입	가축 구입
지주	-	27.40	3.49	11.45	1.72	1.58	17.18	178.80	15.18	11.87	268.67	10.44	2.86
	(-)	(10.2)	(1.3)	(4.3)	(0.6)	(0.6)	(6.4)	(66.6)	(5.6)	(4.4)	(100.0)	(11.1)	(3.0)
부농	242.61	258.45	36.05	481.86	287.09	5.41	1,165.52	1,149.17	136.67	161.47	3,924.30	79.75	74.56
	(6.2)	(6.5)	(0.9)	(12.3)	(7.3)	(0.1)	(29.8)	(29.3)	(3.5)	(4.1)	(100.0)	(12.0)	(11.2)
중농 상층	200.85	77.80	15.52	179.42	110.10	2.66	436.99	605.19	65.39	30.70	1,715.62	9.77	32.86
	(11.7)	(4.4)	(0.9)	(9.9)	(6.4)	(0.2)	(23.6)	(35.3)	(3.8)	(1.8)	0.0	(4.3)	(14.4)
중농 하층	143.92	30.12	4.47	88.96	46.39	1.45	127.13	328.31	33.71	10.76	815.22	20.76	4.01
	(17.7)	(3.7)	(0.5)	(10.9)	(5.7)	(0.2)	(15.6)	(40.3)	(4.1)	(1.3)	(100.0)	(24.3)	(4.7)
빈농	53.17	13.19	1.92	21.38	17.67	0.43	31.36	172.69	17.48	4.02	332.31	52.28	7.47
	(16.0)	(3.9)	(0.6)	(6.4)	(5.3)	(0.1)	(9.5)	(52.0)	(5.0)	(1.2)	(100.0)	(52.2)	(7.4)
半雇農	7.97	2.00	0.43	4.44	2.90	0.05	4.29	91.83	8.47	1.39	123.77	3.03	0.62
	(6.4)	(1.7)	(0.4)	(3.6)	(2.3)	(-)	(3.5)	(74.2)	(6.8)	(1.1)	(100.0)	(9.9)	(2.0)
雇農	0.05	0.80	0.20	2.36	0.10	0.11	0.01	74.77	5.25	1.05	85.70	-	0.19
	(-)	(0.9)	(0.2)	(2.8)	(0.1)	(0.1)	(-)	(88.5)	(6.2)	(1.2)	(100.0)	(-)	(1.7)
雜業者	0.25	0.67	0.24	6.07	0.34	-	10.02	79.94	3.59	0.57	101.69	-	-
	(0.2)	(0.7)	(0.2)	(6.0)	(0.3)	(-)	(9.9)	(78.6)	(3.5)	(0.6)	(100.0)	(-)	(-)

구분	臨時支出							총지출 합계(B) (*)	총수입 합계(A) (*)	현금 수입(C) (*)	현금 지출(D) (*)	(C)-(D)		
	農具 구입	冠婚費	葬祭費	의료비	貸付金	상환금	기타							
지주	0.21	15.96	4.35	2.59	36.37	13.54	74.8	93.80	362.47	380.90	18.43	229.40	243.89	-14.49
	(0.2)	(17.0)	(4.6)	(2.8)	(38.9)	(14.4)	(8.0)	(100.0)	(4.2)	(4.2)		(5.7)	(5.6)	
부농	28.97	21.04	69.00	21.76	264.53	48.29	57.30	665.20	4,589.50	4,813.40	223.9	2,274.46	2,472.34	-197.88
	(4.4)	(3.2)	(10.4)	(3.3)	(39.6)	(7.3)	(8.6)	(100.0)	(53.4)	(52.7)		(56.2)	(56.4)	
중농 상층	0.79	3.33	13.68	13.48	40.71	69.00	45.00	228.62	1,944.24	2,109.46	165.22	782.59	855.36	-72.77
	(0.3)	(1.5)	(6.0)	(5.9)	(17.8)	(30.1)	(19.7)	(100.0)	(22.6)	(23.1)		(19.3)	(19.5)	
중농 하층	0.51	7.66	3.06	2.18	13.07	28.74	5.34	85.33	900.55	1,021.24	120.69	330.23	328.49	1.74
	(0.6)	(9.0)	(3.6)	(2.6)	(15.3)	(33.6)	(6.3)	(100.0)	(10.5)	(11.2)		(8.2)	(7.5)	
빈농	1.91	1.52	2.95	6.22	6.93	17.29	3.72	100.27	432.58	424.14	-8.44	163.67	226.33	-62.66
	(1.9)	(1.5)	(2.9)	(6.2)	(6.9)	(17.3)	(3.7)	(100.0)	(5.0)	(4.6)		(4.0)	(5.2)	
半雇農	0.24	3.84	0.97	1.04	6.26	11.93	2.58	30.51	154.28	163.26	8.98	92.59	93.93	-1.34
	(0.8)	(12.6)	(3.2)	(3.4)	(20.5)	(39.1)	(8.5)	(100.0)	(1.8)	(1.8)		(2.3)	(2.1)	
雇農	-	4.36	0.26	1.68	1.09	3.24	0.45	11.27	96.97	107.68	10.71	73.66	67.82	5.84
	(-)	(38.7)	(2.3)	(14.9)	(9.4)	(28.7)	(4.0)	(100.0)	(1.1)	(1.2)		(1.8)	(1.6)	
雜業者	-	5.77	0.28	0.52	0.98	2.72	42.1	14.48	116.17	115.67	-0.5	102.85	95.70	7.15
	(-)	(39.8)	(1.9)	(3.6)	(6.8)	(18.8)	(29.1)	(100.0)	(1.4)	(1.3)		(2.5)	(2.2)	

<출전> 앞의 보고서, 『租稅公課報告書』, 397-398쪽, 『第五十二表 農家群別支出表』(一戶當り平均) A 總評價之部. 현금지출 부분은 399-400쪽, 『第五十三表 農家群別支出表』(一戶當り平均) B 現金之部

<비고> (*)은 각 계층이 전체지출 및 현금지출에서 차지한 비중을 의미한다.

다음에 북만주 각 농민층의 1호당 평균 經常支出현황(<표4> 참조)을 보면, 지주층의 경우 생활비가 경상지출의 2/3(66.6%)를, 조세 공과금이 10.2%, 노임이 6.4%를 차지하고 있었다. 부농층의 경우 생활비가 경상지출의 29.3%를 차지했고, 노임(29.8%), 사료비(12.3%), 肥料費(7.3%), 농기구 구입비(0.9%) 등 대농(부농)경영에 따른 직접적인 영농비와 농지차입에 따른 소작료(6.2%) 등이 전체 경상지출의 56%를 차지하고 있었다. 중농층에서는 생활비가 부농층보다 훨씬 더 큰 비중(35~40%)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경작규모가 작다 보니 직접적인 영농비 지출비중은 더 작았다. 그런데 경작지 차입에 따른 소작료 비중(11~18%)은 부농층보다 훨씬 컸다. 빈농층은 생활비 비중이 컸지만 영농비나 소작료 지출비중은 중농층보다도 작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작규모가 작을수록 경상지출에서 생활비가 차지한 비중이 훨씬 컸다. 특히 반고농층과 고농층의 경우 생활비가 경상지출의 각각 74.2%, 88.5%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던 셈이다.

1호당 평균 臨時支出현황을 살펴보면, 지주층의 경우 貸付金이 38.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冠婚費(17.0%), 償還金(14.4%), 토지 구입비(11.1%) 순으로 지출비중이 컸다. 부농층에서는 지주층과 마찬가지로 대부금이 3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토지 구입비(12.0%), 大家畜 구입비(11.2%), 大農器具 구입비(4.4%) 등 부농경영에 따른 임시지출 비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부농층의 임시지출 항목에서 주목되는 점은 葬祭費가 10.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고농의 265배, 반고농의 71배, 빈농의 23배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농층이 촌락에서 발생한 장례식이나 공동 祭祀행사 때 촌락에 대한 자신들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4>를 보면 지주층이나 부농층의 경우 대부금 비중이 상환금 비중보다 훨씬 컸지만, 중농 이하의 계층에서는 반대로 상환금이 대부금보다도 훨

진 컸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농 이하의 계층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느라 허덕이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부농층의 생활비, 연료비, 雜지출 등 기본 생활비용은 1,447원으로 빈농층의 해당 지출비용보다 7.5배, 반고농층보다 14배, 고농층보다 18배에 달했다. 이것은 부농층의 기본 생활비 지출규모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복지와 관련된 의료비 지출현황을 보면, 부농층은 빈농층보다 3.5배, 반고농층보다 21배, 고농층보다 13배나 많았다. 더욱이 고농층에서는 그 미미한 의료비조차도 전체 임시지출의 15%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점을 고려해보면, 그들은 아마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호당 평균 수입과 지출을 대비해보면, 지주층은 18.43원, 부농층은 223.9원, 중농 상층은 165.22원, 중농 하층은 120.69원, 반고농층은 8.98원, 고농층은 10.71원의 흑자를 내고 있었지만, 빈농층은 8.44원, 잡업자층은 0.5원의 적자를 내고 있었다. 빈농층이 적자를 내고 있었다는 것은, 이 계층이 농업경영이나 생활과정에서의 적자로 인해 점차 몰락하면서 반고농층으로 下降分解되고 있었음을 시사해준다.

<표-5> 계층별 1호당 평균 현금생활비 지출현황(1934)(단위: 戶, 圓, %)

구분	호수	1인당 (*)	합계	주거	식료	피복	光熱費	什器 (器物)	교육	慶弔費	기호품	오락	의약	年紙	기타
지주	46 (6.6)	18.73 (95.3)	109.93 (100.0)	5.44 (4.9)	37.98 (34.5)	18.22 (16.6)	11.16 (10.2)	0.75 (0.7)	4.33 (3.9)	8.79 (8.0)	5.55 (5.4)	1.62 (1.5)	2.53 (2.3)	5.85 (5.3)	7.70 (7.0)
부농	17 (2.5)	19.66 (100)	403.01 (100.0)	11.86 (2.9)	123.01 (30.5)	75.88 (18.8)	56.46 (14.0)	7.39 (1.8)	9.86 (2.4)	34.21 (8.5)	28.60 (7.1)	0.69 (0.7)	21.66 (5.4)	19.38 (4.8)	14.01 (3.5)
중농 상층	21 (3.1)	11.90 (60.5)	233.49 (100.0)	3.49 (1.5)	113.44 (48.6)	61.89 (26.5)	12.75 (5.5)	3.27 (1.4)	1.37 (0.6)	9.05 (3.9)	8.15 (3.5)	1.67 (0.7)	2.81 (1.2)	12.10 (5.2)	3.50 (1.5)
중농 하층	77 (11.3)	10.31 (52.4)	116.35 (100.0)	3.48 (3.0)	54.46 (46.8)	27.91 (24.0)	7.44 (6.4)	1.05 (0.9)	0.84 (0.7)	7.66 (6.6)	3.86 (3.3)	0.28 (0.2)	1.82 (1.6)	6.18 (5.3)	1.31 (1.1)
빈농	93 (13.7)	11.24 (57.2)	83.25 (100.0)	2.73 (3.3)	39.06 (46.9)	19.30 (23.2)	4.96 (6.0)	0.53 (0.6)	0.69 (0.8)	6.49 (7.8)	3.02 (3.6)	0.10 (0.1)	1.64 (2.0)	4.19 (5.0)	0.54 (0.6)
半雇農	157 (23.1)	9.90 (50.1)	54.74 (100.0)	4.27 (7.8)	29.50 (53.9)	9.43 (17.2)	3.38 (6.2)	0.27 (0.5)	0.43 (0.8)	2.68 (4.9)	1.25 (2.3)	0.02 (0.1)	0.77 (1.4)	2.55 (4.7)	0.19 (0.3)
雇農	234 (34.4)	10.04 (51.1)	53.18 (100.0)	6.57 (11.9)	29.79 (54.0)	9.81 (17.8)	2.81 (5.1)	0.30 (0.5)	0.16 (0.3)	1.79 (3.2)	0.98 (1.8)	0.08 (0.1)	0.46 (0.8)	2.14 (3.9)	0.29 (0.5)

구분	호수	1인당 (*)	합계	주거	식료	피복	光熱費	什器 (器物)	교육	慶弔費	기호품	오락	의약	年紙	기타
雜業者	36 (5.3)	16.06 (81.7)	65.85 (100.0)	5.36 (8.1)	35.89 (54.5)	8.90 (13.5)	3.06 (4.6)	0.31 (0.5)	0.46 (0.7)	3.47 (5.3)	3.39 (5.1)	0.03	0.75 (1.1)	2.29 (3.5)	1.04 (1.6)
總平均計	681	11.70	83.80	5.04	39.44	16.75	5.95	0.70	0.93	4.85	2.96	0.26	1.57	3.95	1.40

<출전> 앞의 보고서, 『租稅公課報告書』, 401-402쪽, 『第五十四表 生活費現金支出表』(一戶當り平均).

<비고> (*)는 가족 1인당 평균 지출액을 나타낸 것으로, 부농층을 100으로 했을 때 다른 계층의 대비율을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각 농민층의 1호당 현금생활비 지출현황(<표 5> 참조)을 살펴보면, 부농층은 부양가족 수가 많아서인지 현금지출 총액에서는 다른 계층보다 월등하게 많았지만, 가족 1인당 현금생활비 지출액은 지주층과 비슷했고, 중농 하층, 빈농층, 반고농층, 고농층의 2배가량에 불과했다. 어느 계층을 불문하고 식료비나 피복비가 현금생활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식료비 비중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낮았고 낮을수록 비중이 높았다.⁷⁶⁾

주거비의 경우 자가 주택을 소유한 지주나 부농층에서는 그 비중이 낮았지만 자가 주택이 없던 대다수 반고농층이나 고농층에서는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주나 부농층에서는 광열비, 경조사비, 기호품담배, 아편, 사치품 등비, 의약품비, 교육비 등에 많은 현금을 지출하고 있었던데 비해, 빈농층 이하에서는 그 비중이 미미했다. 특히 의약품 구입비나 교육비를 위한 현금지출의 경우, 지주나 부농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각종 제사 때 소모되던 年紙의 경우, 계층을 불문하고 현금지출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북만주 농촌에서 복을 기원하는 관습과 밀접한 연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있다.

76) 滿洲農産公社理事長室調査科 編, 1942, 『康徳八年度 主要農産物生産費に關する調査報告書』, 新京: 同調査科, 189쪽.

<표-6> 만주의 연도별 생계비 평균 지수현황

구분	식료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잡비	총지수
1936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937	110.97	106.59	102.45	100.96	105.35	106.76
1938	124.12	142.29	107.66	110.62	124.36	124.54
1939	160.81	205.19	138.37	137.34	145.68	158.84
1940	227.21	301.15	168.00	17.82*	185.72	215.55
1941	272.41	326.61	170.89	207.82	215.46	245.97

<출전> 『滿洲中央銀行物價年報』에 기초한 滿洲農産公社理事長室調査科 編, 1942, 『康徳八年度 主要農産物生産費に關する調査報告書』, 新京: 同調査科, 192쪽, 「第十八表 生計費指數」에 의한다.

<비고> *는 인플레이션의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만주에서는 농민들의 생활수준과 직결된 생계비가 1930년대 후반 들어 급등하고 있었다. 이것은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앙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1938~1941년 사이 생활필수품의 표면적인 공정가격은 보통 20~30% 오른 것으로 공시되고 있었지만 암시장에서의 가격은 공정가격의 몇 배나 되었다.⁷⁷⁾ 구체적인 사례(<표-6> 참조)로 1936~1941년 사이 평균 생계비의 추이를 보면, 식료비는 272.4%, 피복비는 326.6%, 주거비는 170.9%, 광열비는 207.8%, 잡비는 215.5% 등귀했고, 전체 평균으로는 생계비가 215.6% 올랐다.

또한 만주국 協和會全國聯合會에서 1938년 6월~1940년 6월 시기 소매물가 추이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쌀감은 290%, 木炭은 250%, 석유는 560%, 소고기는 200%, 돼지고기는 210%, 두유는 250%, 식염은 100%, 醬油는 280%, 설탕은 300%, 가죽신발은 330%, 모자는 250%, 담배는 180%, 수건은 400%, 찻잎은 250%, 밀가루는 370%, 닭은 200%, 맥주는 260%, 淸酒는 290%, 면포는 750%, 면화는 250%, 綿絲는 440%, 운동화는 400%로 오르는 등 생활필수품은 대체로 100~750%가량 급등하고 있었다.⁷⁸⁾

특히 1938~1940년 사이에 면포는 7.5배, 석유는 5.6배, 면사는 4.4배, 수건과 운동화는 4배로 급등하고 있었다. 당시 북만주에서 농민들이 구입하는

77) 앞의 보고서, 『康徳八年度 主要農産物生産費に關する調査報告書』, 190-191쪽.

78) 앞의 보고서, 『康徳八年度 主要農産物生産費に關する調査報告書』, 196-198쪽.

생활필수품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綿布와 綿絲였다. 농민들은 가을에 농산물을 城內의 糧棧으로 운반해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면 곧바로 잡화점이나 의복점으로 가서 필요한 면포를 구입하거나 양잔이 잡화점을 겸업하면 거의 물물교환 형태로 농산물과 면포를 교환하곤 했었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 이후 면포의 수입 감소, 면화의 수입제한으로 방직공장의 조업이 단축되면서 면포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있었다. 그 결과 면사포의 가격은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상 이상으로 등귀하고 있었다. 게다가 관련 배급기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거나 기능을 못해서 면사포의 배급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었으며, 농민들은 정상적인 수단으로는 면사포를 입수할 수가 없어서 공정가격의 3~5배로 구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욱이 면사포 자체가 시중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白麪, 성냥, 석유, 고무화, 콩기름 등의 모든 물가도 등귀하고 있었고 구입하기도 어려웠다.⁷⁹⁾

<표-7> 주요 농산물의 가격 등귀현황(단위: 圓)

구분		大豆	小麥	谷子	高粱	包米
1934(a)		9.42	16.05	6.37	7.38	6.91
1938(b)		17.75	27.79	12.27	15.00	14.25
1939(c)		18.78	29.66	17.90	18.11	15.50
등귀율	(c/a)	200.3	184.8	281.0	245.5	245.0
	(c/b)	106.3	106.7	145.9	120.7	109.3

<출전> 앞의 보고서, 『康徳八年度 主要農産物生産費に關する調査報告書』, 195쪽, 『第二十表 主要農産物價格比』.

<비고> 1934년도 수치는 만주국 稅捐局의 공정가격 평균치이고, 1938~1939년도는 실제 판매단가이다.

농업노동자의 임금이나 농민들의 생계비 못지않게 농산물가격도 등귀하고 있었다. 1934~1939년 사이 만주의 주요 농산물의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표-7> 참조), 大豆 가격지수는 200.3, 小麥은 184.8, 谷子는 281, 高粱은 245.5,

79) 앞의 보고서, 『康徳八年度 主要農産物生産費に關する調査報告書』, 190-191쪽.

包米는 245였다. 5년 사이에 주요 농산물의 가격은 이 기간 최소 85%, 최대 2.8배까지 올랐던 것이다. 그런데 농산물과 아울러 생활필수품의 소매물가 역시 등귀하고 있었다. 滿洲農産公社에서 1938년 6월부터 1940년 6월까지 주요 농산물의 가격지수 추이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高粱은 110.4, 포미는 115, 大豆는 93, 粟은 44, 보리(麥)는 233, 胡麻는 166로⁸⁰⁾, 전체적으로 농산물의 등귀율이 생필품가격의 등귀율에 비해 낮았다. 특히 대두나粟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것은 농민들의 농업경영의 수지악화와 생활수준의 저하를 의미한다.

<표-8> 농민층별 負債·貸付현황(1934)(단위: 圓, %)

구분	호수	1호당평균 경상수입	부채농가 비율	1호당 평균부채액	1호당 평균부채율	貸付농가 비율	1호당 평균대부액	1호당 평균대부율
지주	46	6.14	73.9	187.27	89.7	47.8	299.41	221.51
부농	17	245.40	94.1	1,741.60	44.4	94.1	258.89	6.59
중농상층	21	87.03	71.4	497.27	38.1	61.9	49.80	4.40
중농하층	77	11.40	83.1	212.38	29.1	36.4	18.87	5.91
빈농	93	3.75	69.9	105.05	43.1	30.1	29.66	28.27
半雇農	157	0.81	61.1	54.45	70.2	17.8	19.19	84.81
雇農	234	0.40	43.6	35.29	87.2	9.8	4.73	51.81
雜業者	36	237.47	52.8	17.43	38.6	33.3	98.46	345.54
합계	681	-	60.4	135.42	-	24.9	45.66	-

<출전>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7, 『農家の負債並に貸借關係篇—康徳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資料45-6)(이하에서는 『負債貸借關係報告書』라 약칭함), 新京: 同調査局, 5-6쪽, 『第二表 群別農家負債並に貸付額』.

<비고> 1호당 평균 부채율과 대부율은 전체 경상수입에서 부채액과 대부액이 차지한 비율을 의미한다.

북만주 농촌의 負債 및 貸付현황을 농민층별로 살펴보면(<표-8> 참조), 1호당 평균 경상수입은 부농과 잡업자가 타 계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부농의 경상수입은 대략 빈농·반고농·고농의 수입보다 각각 65배, 303배, 613배에 달했다. 각 농민층 내부에서 부채를 짊어지고 있던 농가의 비율은

80) 앞의 보고서, 『康徳八年度 主要農産物生産費に關する調査報告書』, 199쪽.

부농이 94.1%로 가장 높았고 고농이 43.6%로 가장 낮았다. 1호당 평균 부채액 역시 부농이 고농의 49배에 달했다. 그렇지만 전체 경상수입에서 부채가 차지한 비율은 지주가 89.7%, 부농이 38.1%였는데 비해, 반고농은 70.2%, 고농은 87.2%로 매우 높았다. 지주의 부채율이 높았던 것은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지주층에는 소유지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가 자가 노동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영세한 토지를 대부한 농가가 많았기 때문이다.

농민층별로 대부 농가의 비율을 보면, 부농이 94.1%, 중농상층이 61.9%였는데 비해, 반고농과 고농은 각각 17.8%, 9.8%로 매우 낮았다. 부유한 계층일수록 대부를 한 농가가 많았던 것이다. 빈궁한 이들이 대부할 수 있었던 것은 친척관계나 지인관계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대부관계라고 할 수 있다. 1호당 평균 대부액 역시 지주와 부농의 액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농민층별로 전체 경상수입에서 대부액이 차지한 비율을 평균해서 살펴보면, 지주와 잡업자는 경상수입의 2~3배를 대부하고 있었다. 부농이나 중농의 대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그것은 영농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표-9> 농민층별 부채총액과 용도현황(1934)(단위: 圓)

구분	부채총액	생활비	농경비	租稅公課	부채상환	投資貸付	기타	불명
지주	8,614.30 (100.0)	2,904.28 (33.7)	1,615.07 (18.7)	151.62 (1.8)	1,229.84 (14.3)	2,008.71 (23.3)	529.78 (6.2)	175.00 (2.0)
부농	29,607.21 (100.0)	3,190.96 (10.8)	15,769.36 (53.3)	892.20 (3.0)	9,378.00 (31.7)	-	-	376.69 (1.3)
중농상층	10,442.59 (100.0)	2,510.00 (24.0)	5,944.5 (56.9)	-	1,624.63 (15.6)	53.15	-	310.31 (3.0)
중농하층	16,353.62 (100.0)	8,854.86 (54.1)	5,738.48 (35.1)	134.11 (0.8)	647.93 (4.0)	18.00	90.00 (0.5)	870.24 (5.3)
빈농	9,769.81 (100.0)	4,327.86 (44.3)	2,449.23 (25.1)	198.41 (2.0)	1,880.05 (19.2)	342.05 (3.5)	165.00 (1.7)	407.21 (4.2)
반고농	8,548.59 (100.0)	5,460.19 (63.9)	1,674.88 (19.6)	4.90	701.95 (8.2)	10.00 (0.1)	118.06 (1.4)	578.61 (6.8)
고농	8,258.80 (100.0)	6,903.14 (83.6)	177.17 (2.1)	-	426.77 (5.2)	237.00 (2.9)	5.00	509.72 (6.2)

구분	부채총액	생활비	농경비	租稅公課	부채상환	投資貸付	기타	불명
잡업자	627.64 (100.0)	265.61 (42.3)	110.22 (17.6)	-	-	62.03 (9.9)	21.00 (3.3)	168.78 (26.9)
합계	92,222.56 (100.0)	34,416.92 (37.3)	33,478.99 (36.3)	1,381.24 (1.5)	15,889.17 (17.2)	2,730.94 (3.0)	928.84 (1.0)	3,396.56 (3.7)

<출전> 앞의 보고서, 『負債貸借關係報告書』, 7-8쪽의 「第三表 群別用途別負債額全額」 및 13-14쪽, 「第六表 群別用途別負債額百分比」.

<비고> 생활비에는 생활비 관련 임시 지출액이, 농경비에는 농경비 관련 임시 지출액이 포함되어 있다.

1934년도에 16개현의 농가 681호를 대상으로 조사된 농가의 부채용도(<표-9> 참조)를 보면, 생활비, 농경비, 조세공과금, 부채상환, 투자대부금 등에 사용되었다. 특히 생활비와 농경비에 약 1/3씩의 차입금(부채)이 충당되었고 부채상환 비율도 상당히 컸다. 그리고 경작규모가 큰 농민층일수록 차입금 중에서 생활비에 충당된 비율이 낮은 반면에 영세농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농업노동자인 반고농과 고농의 생활비 충당비율은 각각 2/3, 4/5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이에 비해 경작규모가 큰 부농과 중농상층의 경우, 차입금 중에서 농경비에 충당한 비율이 각각 56.9%, 35.1%로서 타 계층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또한 이 두 계층과 빈농의 경우 부채상환 비율 역시 비교적 높았다. 지주의 경우 투자차원의 대부에 전체 차입금의 1/4 가량을 쓰고 있었다. 1호당 평균 부채총액의 경우, 부농을 비롯해 경작규모가 클수록 부채가 많았다. 1934년 조사당시 계층별 1호당 평균 부채액이 농가 전체 부채액에서 차지한 비중만을 보면, 부농은 4.6%로 가장 낮았지만 중농 하층과 빈농의 부채비중은 각각 30%, 23%로 매우 높았다.⁸¹⁾ 이것은 1년치의 채무비중이 부농에게는 미미했지만 중농 하층과 빈농에게는 매우 과중했음을 말해준다. 그것은 동시에 부채로 인한 중농 하층과 빈농의 몰락과 下層分解를 짐작케 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1934년에 차입한 뒤 그 해에 상환한 부채의 용도(<표-9> 참조)를 살펴보

81) 앞의 보고서, 『負債貸借關係報告書』, 67-78쪽, 「第十二表 年度内の負債」.

면, 지주는 생활비로 38.4%, 농경비로 4.2%, 기타 용도로 57.3%를, 부농은 생활비로 100% 전액을 사용하고 있었다. 중농 상층은 생활비로 65.8%, 농경비로 30.9%를, 중농 하층은 생활비로 41.4%, 농경비로 55.1%, 부채 상환에 1.4%를, 빈농은 생활비로 30.7%, 농경비로 34.1%, 부채상환에 28.7%를 사용했다. 반고농은 생활비로 73.5%를, 농경비로 26.5%를, 고농은 생활비로 92.7%를, 농경비로 2.5%를 사용하고 있었다.⁸²⁾ 1934년도 차입금의 용도를 보면, 부농은 사치성 생활비로, 중농 상하층은 생활비와 영농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다. 빈농은 대략 생활비, 농경비, 부채상환에 각각 1/3씩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빈농의 부채상환액 비중이 타 계층보다 훨씬 컸다는 점은 그만큼 그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농업 임노동자인 반고농과 고농은 차입금의 대부분을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생존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부채를 짊어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1934년도 북만주 농민층의 차입금 年利를 살펴보면, 전체 차입건수 165건 중에 무이자 57%(94건), 4~5할이 12.7%(21건), 3~4할이 11.5%(19건), 6~7할이 9.7%(16건)를 차지하고 있었다.⁸³⁾ 부채의 借入先을 보면, 春耕貸付額이 26.1%, 농민층이 58.7%, 영리적인 대부업자(當舖, 錢舖, 貸金業)가 3.8%, 상인층(상인, 雜貨舖, 糧棧, 油房 등)이 3.4%, 잡업자가 2.6%, 不明이 4.5%를 차지하고 있었다.⁸⁴⁾ 농민들은 차입금의 3/4 가량을 농촌 내부의 다른 농민들이나 고리대부업자, 상인층, 잡업자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있었다. 근대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된 春耕 대부액은 26.1%에 그쳐 있었다. 전체 춘경 대부액 2만 4,026.51圓 중에서 각 농민층이 차지한 비중을 살펴보면, 지주는 12.5%, 부농은 56.2%, 중농 상층은 10.0%, 중농 하층은 14.4%, 빈농은 8.3%, 반고농은 1.4%, 고농은 0.4%, 잡업자는 0.5%였다.⁸⁵⁾ 근대적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낮은 이율로 대부되고 있던 춘경 대부액의 경우 부농이 56.2%

82) 앞의 보고서, 『負債貸借關係報告書』, 67-78쪽, 『第十二表 年度内の負債』.

83) 앞의 보고서, 『負債貸借關係報告書』, 67-78쪽, 『第十二表 年度内の負債』에서 산출.

84) 앞의 보고서, 『負債貸借關係報告書』, 73-74쪽, 『第十四表 群別借入先別負債額』에서 산출.

85) 앞의 보고서, 『負債貸借關係報告書』, 73-74쪽, 『第十四表 群別借入先別負債額』에서 산출.

를, 경작규모가 크지 않은 지주가 1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낮은 이율의 춘경자금을 더 필요로 했던 빈농층이나 반고농은 커다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1934년도 농가 1호당 평균 춘경 대부액을 살펴보면, 부농의 대부액(794.7원)은 중농 하층(44.94원), 빈농(21.51원), 반고농(2.18원)보다⁸⁶⁾ 각각 18배, 37배, 364배나 많았다. 사회경제적으로 관련 금융기관과 폭넓은 인적 관계망과 신용도를 지닌 부유층은 빈농 하층이나 영세농보다 대출상의 혜택을 훨씬 더 누리고 있었다. 이것은 북만주 농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국 만주농촌에서는 그 해에 차입한 부채를 그 해에 갚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기는 비율이 높을 만큼 부채의 固定化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농민들의 부채 借入先 역시 근대적 금융계통인 金融合作社, 만주국 중앙은행의 春耕貸付, 금융조합보다도 농촌 내부에서의 개인 상호간의 貸借에 치중되어 있을 만큼 봉건적 색채가 농후했다. 그 결과 대차관계에는 만주농촌 경제사회의 소작관계, 고용관계 등에서의 부농과 빈농 사이의 예측관계가 반영되어 있었으며, 친척관계, 知人관계 등에 의한 자치적 상호부조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⁸⁷⁾

VI. 만주국의 전시경제정책과 농민생활

한편 만주국에서 일본 식민당국이 추진한 각종 전시경제정책, 특히 조세 정책 및 농산물 통제정책은 만주농민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먼저 1934년도 북만주 농촌의 조사대상 농가 681호의 조세부담금 현황을 稅目別로 살펴보면, 국세가 30.1%(기본세금인 大租 20.7%, 糧石稅 8.3%, 벌금 0.9%, 기타

86) 앞의 보고서, 『負債貸借關係報告書』, 77-78쪽, 『第十六表 群別借入先別負債額』(全農家一戶當)에서 산출.

87) 滿洲國實業部臨時產業調查局 編, 1938, 『農家の負債並に貸借關係篇(南滿の部) - 康徳三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資料45-15), 新京: 同調査局, 緒言, 1쪽.

0.2%), 縣稅(토지세인 响捐 25.7%, 糧捐 14.5%, 교육세인 學田租 1.1%, 기타 6.1%)가 47.4%, 村費가 22.5%를 차지하고 있었다.⁸⁸⁾ 농민층의 총량적인 조세부담률은 지주가 10.9%, 부농이 39.5%, 중농 상층이 14.3%, 중농 하층이 20.1%, 빈농층이 10.6%, 반고농층이 2.7%, 고농층이 1.7%, 잡업자가 0.2%였다.

그런데 농민층별 조세공과금 부담률을 계층별 실질적 熟地 소유면적 비율(<표-1> 참조)과 대비해 상대화해보면, 지주는 조세부담률과 토지소유비율이 각각 10.9%, 18.9%, 부농층은 39.5%, 44.9%, 중농 상층은 14.3%, 10.4%, 중농 하층은 20.1%, 14.8%, 빈농층은 10.6%, 9.31%, 반고농층은 2.7%, 1.8%, 고농층은 1.7%, 0%, 잡업자층은 0.2%, 0%였다.⁸⁹⁾ 결국 촌락에서 영향력을 지녔던 지주와 부농의 조세공과금 부담률은 토지소유면적 비율에 비해 낮았던데 비해, 중농 이하의 계층의 그것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토지를 거의 소유하지 못했던 반고농층과 고농층의 상대적인 조세공과금 부담률은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조세공과금 가운데 村費만을 살펴보면, 100상 이상의 토지를 지닌 부농층은 그 부담률이 34.6%로 토지소유면적 비율 50%에 비해 훨씬 낮았고, 반면에 5~20상을 지닌 빈농층, 1~5상을 지닌 반고농층, 1상 미만의 고농층의 촌비 부담률은 각각 11.4%, 4.2%, 3.2%로⁹⁰⁾, 이들 농민층의 토지소유면적 비율 10.0%, 2.0%, 0.1%에 비해 높았다. 또한 각 농민층별로 조세공과금 가운데 촌비가 차지한 비중을 살펴보면, 지주와 부농층은 각각 16.9%, 19.6%를 차지한데 비해, 반고농층과 고농층은 각각 35.2%, 44.9%를 차지하고 있었다.⁹¹⁾ 반고농층과 고농층이 부담한 촌비의 상대적인 비율은 그들의 경제적 능력에 비해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각 촌락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지녔던 지주와 부농들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88) 앞의 보고서, 『租稅公課報告書』, 379-380쪽, 『第四十五表 農家群別租稅負擔狀況表』, 387-388쪽, 『第四十八表 稅種別負擔割合表』.

89) 앞의 보고서, 『租稅公課報告書』, 387-388쪽, 『第四十七表 租稅公課及土地所有面積對照表』.

90) 앞의 보고서, 『租稅公課報告書』, 383-384쪽, 『第四十六表 農家群別負擔比重表』.

91) 앞의 보고서, 『租稅公課報告書』, 387-388쪽, 『第四十八表 稅種別負擔割合表』.

<표-10> 만주국의 稅收 및 1인당 세금부담액(1937~1943)

연도	세수총액 (千圓)	인구 (人)	1인당 평균 부담액(圓)	직접세		간접세	
				실수(千圓)	1인당 평균액(圓)	실수(千圓)	1인당 평균액(圓)
1937(a)	246,936	36,949,972	6.68	35,473	0.96	145,180	3.39
1940(b)	520,656	41,659,765	12.50	92,305	2.21	28,578	6.85
1943(c)	757,325	46,735,896	16.22	217,686	4.66	468,172	10.02
c/a(%)	307	126	243	614	485	322	296

<출전> 滿洲國經濟部 編, 1941, 『第十次稅務統計年報』; 滿洲中央銀行 編, 1943, 『康德十年豫算表』; 滿洲國總務廳 編, 1943, 『省地方豫算概要』, 新京: 同總務廳; 滿洲國總務廳 編, 1937, 1940, 『滿洲帝國統計月報』; 姜念東 等 編, 1980, 『偽滿洲國史』,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416쪽.

다음에 만주국의 전체적인 세금부담현황(<표-10> 참조)을 살펴보면, 1937~1943년 사이에 인구는 3,694만 9,972명에서 4,673만 5,896명으로 126%가 증가했지만, 같은 시기 稅收는 2억 4,693만 6천원에서 7억 5,732만 5천원으로 307% 증가했다. 즉 6년 동안 1인당 평균 세금부담액은 6.68원에서 16.22원으로 243% 증가하고 있었다. 특히 직접세의 경우 이 시기 1인당 세수부담액은 485%나 폭증하고 있었다. 또한 1933~1934년 만주국의 국세는 3,734만 원에서 5,308만원으로 42.2%나 폭증했고, 농민의 생활과 직결된 田賦(토지세) 역시 같은 기간에 772만원에서 1,144.2만원으로 48.2%나 폭증하고 있었다.⁹²⁾ 국세보다도 농민이 부담한 田賦의 증가율이 더 높았던 셈이다.

상술한 것처럼 만주국의 조세부담률이 단기간에 폭증한 것은 만주국의 재정수입에서 차지한 국방비나 치안비의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즉 1937년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킨 후, 만주국의 재정수입에서 국방비와 치안비가 차지한 비중은 1932~1937년 시기에 5.3%에서 32.3%로 폭증하고 있었고, 그 후에도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1940년에 32.1%, 1942년에 32.1%, 1943년에 29.7%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결과 국방비와 치

92) 孫邦 主編, 1993, 『偽滿史料叢書 經濟掠奪』,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642-660쪽; 李淑娟 等著, 2014, 『日本殖民統治與東北農民生活』,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55쪽.

안비는 1932년에 808만 8천 원이었던 것이 1943년에는 3억 1,320만 3천 원으로 무려 38.7배나 폭증하고 있었다.⁹³⁾ 특히 1941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벌인 후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과의 무역이 완전히 단절되면서 관세수입은 급감해서 1940~1942년 사이 만주국의 關稅가 세수총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53.1%에서 23.8%로 급감했고 대신에 내국세의 비중은 같은 시기 46.9%에서 76.2%로 급증하고 있었다.⁹⁴⁾ 또한 1937~1943년 시기 만주국의 수익세와 소비세를 합한 내국세의 증세추이를 보면, 1937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38년 110, 1939년 167, 1942년 509, 1943년 767로 폭증하고 있었다.⁹⁵⁾ 이것은 일본 식민당국이 관세의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내국세를 대규모로 증액해 만주국 주민에 대해 대대적으로 증세를 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내국세의 폭증 규모는 정상적인 세금수취라기보다는 ‘세금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 식민당국이 만주국 주민에게 자행한 대규모 생활비 강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더욱이 태평양전쟁 발발 후 일본의 군비가 증강하면서 만주국은 일본의 군수보급기지로 전락되었다. 이것의 일환으로 일본 식민당국은 태평양전쟁 발발 후 부족해진 군사비를 보충하기 위해 『戰時經濟緊急法案』을 공포하였고, 1941년부터 1944년 12월까지 매년 한 차례씩 4차례에 걸쳐 戰時增稅를 감행해 나갔다.⁹⁶⁾ 특히 일본은 만주국의 소비, 유통, 소득의 세 분야에서 4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증세를 실시했으며, 그 기간 동안 세수항목도 20여종에서 60여종으로 늘어났고 세율도 대폭 높아졌고 세수총액도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⁹⁷⁾ 상술한 각종 조세수치는 만주국 주민뿐만 아니라 상대적

93) 滿洲國國務院總務廳主計處 編, 1944, 『康徳十年 財政統計』(1932~1943年版) 재정수입에서 산출; 李淑娟 等, 2014, 앞의 책, 244쪽, 『表4-11 1932~1943年偽滿財政收入及國防治安支出』.

94) 關口壽一, 1942, 『滿洲經濟十年史』, 新京: 自信社, 105쪽, 463쪽.

95) 淺田喬二·小林英夫 編, 1986,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15年戰爭を中心に—』, 東京: 時潮社, 910쪽.

96) 姜念東 等 編, 1980, 『偽滿洲國史』,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413-416쪽; 李淑娟 等, 2014, 앞의 책, 244-247쪽.

97) 滿洲國史刊行會 編, 1970, 『滿洲國史』(各論) 上卷, 東京: 滿蒙同胞援護會, 282쪽, 942쪽.

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처한 만주농민들의 생활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다른 한편 만주국 식민당국은 농산물 통제과정에서 농산물의 出荷를 강요했고 심지어 농민의 기본식량조차 출하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실례로 1940~1944년까지 식민당국에서 收買한 농산물의 추이를 보면, 1940년 580만 톤, 1941년 650만 톤, 1942년 720만 톤, 1943년 820만 톤, 1944년 890만 톤으로 1943~1944년에는 예정된 수매량을 초과해서 수매했다. 게다가 이 기간 일본에 대한 식량 원조량은 각각 160만 톤, 180만 톤, 220만 톤, 260만 톤, 300만 톤에 달했다. 그리고 관동군을 위한 군량미 역시 매년 80만 톤, 100만 톤, 100만 톤, 100만 톤, 120만 톤이 책정되었다. 또한 ‘報恩出荷’라는 명목으로 1943~1944년에는 추가로 70만 톤의 식량을 강제 출하해 일본으로 보냈는데, 이러한 식량의 강제 출하는 만주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⁹⁸⁾

그런데 식민지적 식량수탈정책과 관련해 만일 농민이 농산물 관련 각종 법령을 위반하면 처벌하거나 체포했다. 또한 농산물의 공식 수매가격도 당시의 생산비용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⁹⁹⁾ 그 결과 만주농민들은 大豆 등 통제 농산물의 수매를 거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농산물의 시장 출하량도 감소하고 있었다.¹⁰⁰⁾ 그러자 만주국의 각 현에서는 매년 春耕하기 전에 농가마다 농작물의 파종면적, 예상 수확량, 출하량 登記表를 발급하고 거기에 호주의 성명, 연령, 가족 수, 노동력, 雇農, 役畜의 수량, 경지면적, 농작물 품종의 수확량과 출하량 등을 적어 넣었으며, 동시에 양곡 출하증도 발급해서 출하 품종을 나타내었다. 파종 이후에는 縣公署에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각 村이나 屯에 파견해서 농작물의 품종이나 재배면적까지 간섭하고 강요했다. 만주국에서는 농민들이 양곡을 감추거나 암시장에 몰래 내다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곡수매 시기에 집단적으로 출하를 하게 했다.

98) 『古海忠之筆供』(1954.6.13), 中央檔案館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合編,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 東北經濟掠奪』, 北京: 中華書局, 1994, 501-502쪽.

99) 『查譜古海忠之筆錄』(1954.10.30), 위의 자료집, 『東北經濟掠奪』, 503쪽.

100) 『飯守重任供詞』(1954.12.19), 앞의 자료집, 『東北經濟掠奪』, 505-506쪽.

즉 각 촌장이나 屯長의 帶領 하에 전체 촌민을 집합시켜놓고 정해진 시간과 노선에 맞추어 수십 대의 마차들이 糧穀出荷隊를 조직하게 한 뒤 경찰의 호송 하에 양곡을 交易所까지 운반하게 했다.¹⁰¹⁾ 각 省이나 縣에서는 양곡의 출하를 독려하기 위한 본부를 조직했고, 그 밑에는 ‘搜荷工作班’, ‘取締班’, ‘情報班’, ‘配給班’, ‘宣撫班’, ‘청소년특별공작반’ 등을 조직해서 양곡의 출하를 강제했다.¹⁰²⁾ 당시에는 농작물의 파종부터 양곡의 출하까지의 모습이 마치 무장경찰이 ‘군사토벌’을 하는 것처럼 농민들에게 비쳐지고 있었다.¹⁰³⁾

만주국의 강압적인 양곡 출하는 농민에게는 재난이었다. 출하과정에서 수많은 농민들은 식민당국의 핍박을 받았고, 모든 지역에서 농민들에 대한 식민당국의 폭행과 만행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북만주 林甸縣의 어떤 농민은 우물에 뛰어들어 자살했고 어떤 사람의 집은 불타버렸다. 夫餘縣의 어떤 농민은 출하할 양곡이 없는데도 계속 강요를 받아 땅문서를 대문에 붙여 놓은 채 가족들과 함께 도주했다.¹⁰⁴⁾ 북만주의 濱江省 呼蘭縣 許堡村의 謝家는 강요받은 양곡을 출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두 딸을 팔아 버리기도 했다.¹⁰⁵⁾ 농산물의 강제출하와 관련해 1940~1945년 사이 약 2만 명이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약 10%가 재판에서 형벌을 받았다.¹⁰⁶⁾ 농산물의 강제출하는 필연적으로 소비물자의 부족과 식량결핍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만주농촌에서는 식량이 떨어져 초근목피로 연명하거나 세상을 비판해 자살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었으며, 굶어 죽는 자들도 매우 많았다.¹⁰⁷⁾ 그 결과 사망률도 높아지고 있었다.¹⁰⁸⁾ 더욱이 식량을 비롯한 물자부족은 물가의 등귀를 초래했다. 가령 1941년을 기준으로 양곡

101) 앞의 자료집, 『東北經濟掠奪』, 626쪽; 李淑娟 等, 2014, 앞의 책, 144-145쪽.

102) 『金名世證詞』(1954.11.11), 위의 자료집, 『東北經濟掠奪』, 545쪽.

103) 앞의 자료집, 『東北經濟掠奪』, 626쪽; 李淑娟 等 著, 2014, 앞의 책, 145쪽.

104) 『華榮棟證詞』(1957.5.1), 앞의 자료집, 『東北經濟掠奪』, 573쪽.

105) 『查諱被害人謝淑蘭筆錄』(1957.5.5), 앞의 자료집, 『東北經濟掠奪』, 581쪽.

106) 『飯守重任供詞』(1954.12.19), 앞의 자료집, 『東北經濟掠奪』, 505-506쪽.

107) 『佳木斯憲兵隊長出口元關於三江省食糧異常缺乏而發生民心動搖的報告』(1942.6.4)(佳憲高第508號)(李淑娟 等 著, 2014, 앞의 책, 154쪽에서 재인용).

108) 王子衡, 『爲“聖戰”掠奪糧穀』, 앞의 자료집, 『東北經濟掠奪』, 223-224쪽.

의 암시장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1944년 長春에서는 638.3, 심양에서는 790.5, 하얼빈에서는 790.5로, 3년 사이에 6~7배나 폭등하고 있었다.¹⁰⁹⁾

만주의 농민들은 일본 식민당국의 잔혹한 양곡출하 공작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 속에서 식민당국에 대한 불만과 의심, 원한을 품은 채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해 나가고 있었다.¹¹⁰⁾ 소수의 부유한 지주나 부농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농민들 역시 일본이 저지른 식민지적 惡政과 농업 외적인 식민지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궁핍하고 불안한 생활을 해나갔던 것이다. 북만주의 농민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 역시 일본의 전시경제정책으로 궁핍한 생활을 영위해나갈 수밖에 없었다.

Ⅶ. 결론

북만주에서 출현한 토지소유관계, 그것을 토대로 형성된 촌락(屯)의 형태와 구조, 그 속에서 규정된 농민들의 역할과 위상 등은, 북만주가 새롭게 개척·개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측면이 농후했다. 한마디로 그것들의 특징은 북만주가 ‘개척지’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토지소유를 둘러싼 수많은 변화를 거쳐 형성된 중국 關內지역에서의 토지소유관계와는 달리, 20세기 전후로 개척·개간되기 시작한 북만주에서는 清末 民國 초기의 기득권층---만주 귀족, 舊軍閥, 관료, 攬頭, 대상인 등---에게 대규모의 토지가 집중 개방·拂下되면서 대규모의 토지가 이들 소수의 특권층에게 귀속되었다. 이 상황에서 관내지역에서는 자연재해, 수탈, 빈곤 등으로 삶에 허덕이던 수많은 빈민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 만주로 모여들고 있었지만, 이들은 토지 구입자금, 인맥, 정치적 특권

109) 滿洲中央銀行 編, 1945, 『民價調』 1945年 3月號; 李淑娟 等 著, 2014, 앞의 책, 151쪽.

110) 『哈爾濱憲兵隊長關於濱江省農產物出荷引起農民反應的報告』(1942.5.29)(哈憲高第519號)(李淑娟 等, 2014, 앞의 책, 154쪽에서 재인용).

이 없던 관계로 대부분 토지소유의 기회를 잡을 수가 없었다. 이로 말미암아 북만주 농촌에서는 소수의 대토지 소유자 및 부농 주위를 절대 다수의 雇農과 半雇農 등이 衛星처럼 맴돌면서 삶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 즉 북만주 농촌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극심한 토지소유의 불균등 현상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개간 시기가 얼마 안 된 북만주에서는 未墾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었으며, 미간지의 개척은 북만주 농민의 이동 및 경작면적의 지역적 확충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었다.¹¹¹⁾

물론 북만주의 대토지 소유 농가 중에도 관행적인 토지의 均分相續制, 分家, 가족 성원의 도박, 아편중독, 가정불화 이외에, 匪賊으로부터의 인질비용·치료비·장례비 등의 충당, 사업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토지소유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개척 이래 형성된 토지소유의 심각한 불균등 현상은 기본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게다가 도회지에 거주한 不在地主들의 토지집중 경향은 더욱 농후해지고 있었다. 개척시기가 오래된 촌락일수록 ‘開墾型’ 地主들이 분화되고 있었고, 경작면적의 세분화 및 무경작자의 증가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었다.

한편 북만주 농촌에서 농민층의 토지소유관계는 촌락(둔)의 형성과 구조, 그 안에서의 농민층의 위상과 역할 등이 정해지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었다. 북만주 농촌에서는 이미 분화된 가족이 토지의 大開放 때 새로 취득한 각자의 토지를 개간하고 경작하기 위해 동일한 장소에 모여 생활하면서, 하나의 屯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2~3개의 屯이 모여 자연촌락을 형성하고 있었다. 각 촌락에서는 3, 4세대가 혈연적 유대를 바탕으로 동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고, 촌락의 명칭은 이웃의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굳어져 통용되었다. 북만주 농촌의 촌락들은 대부분 關內에서 넘어온 이주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만주에서 정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이었고 해당 촌락에 대한 향토의식·애향심·유대감이 약했다. 그들은 토지를 중심으로 親인 촌락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

111) 앞의 보고서, 『農業經營報告書』, 2-3쪽.

력과 자치를 통해 자연재해, 野獸나 土匪들의 습격에 대비하거나 방어하면서 공동체적 생존을 유지해나가고 있었다. 북만주의 촌락에서는 개척에 성공한 대토지 소유농가들이 대지주·大農(富農)·재산가로서 군림하고 있었다. 특히 만주국 수립 후 이들이 대부분 치안업무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촌락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도 더욱 커졌다. 각 농가들은 독립된 개별 농가로서가 아니라, 촌락생활의 일원으로서 소작관계, 고용관계, 가옥의 임대차관계, 부채관계, 공동의 방위, 목초지의 공동이용 등 다양한 방면에서 서로 얽혀 있었다. 특히 식량결핍 시기에 식량을 대여해줄 수 있는 부농들은 빈농이나 雇農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지녔기 때문에, 촌락 내부에서는 소수의 부유한 농가들이 유력한 지위를 유지한 채 촌락을 자신들 중심으로 영위해나갔다.

만주국 수립을 전후로 북만주에서는 치안문제가 상존하고 있었다. 그 결과 농민들의 주거생활 역시 치안상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 북만주 농촌의 부유한 촌락들이나 대농의 집들은 대부분 토벽·포대·해자 등의 치안시설과 자위단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 결과 토비나 항일유격대 등의 습격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빈곤한 농민층은 치안설비를 갖춘 유력자나 대농들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것은 촌락에 대한 대농들의 영향력을 한층 강화시켰다.

개척·개간과정에서 형성된 극심한 토지소유관계의 불균등 현상은 북만주 농촌에서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야기하고 있었다. 이것은 만주 농민들의 收支실태 조사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즉 전체 농가호수의 2.5%에 불과한 부농층이 전체수입의 52.7%를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농가호수의 57.5%를 차지한 반고농층과 고농층은 전체수입에서 3%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농층의 총수입은 다른 농민층의 수십 배에 달했다. 半高農층과 고농층은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다. 부농층은 촌락에서 발생한 장례식이나 공동 祭祀행사 때 촌락에 대한 자신들의 지도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

었다. 또한 지주나 부농층에서는 광열비, 경조사비, 기호품(담배, 아편, 사치품 등)비, 의약품비, 교육비 등에 많은 현금을 지출하고 있었던데 비해, 빈농층 이하에서의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부농층은 收支상의 많은 흑자를 내고 있었지만, 빈농층은 적자로 인해 점차 몰락하면서 半自給農層으로 '下降分解'되고 있었다.

다른 한편 만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된 이후, 식민당국이 전시통제경제정책을 실시하면서 각종 물자가 부족해지고 물가가 폭등하고 있었으며, 농민들의 생활비도 급증하고 있었다. 게다가 일본의 戰場이 확대되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만주국의 국방비와 치안비용이 급증한 반면 관세수입은 급감하게 되었다. 이에 만주국 식민당국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급격하게 올렸다. 그로 인해 북만주 농민들의 조세부담액도 폭증하고 경제생활도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대적인 금융기관과 폭넓은 인적 관계와 신용도를 지니고 있던 부농층은 대출상의 혜택을 받고 있었던 반면에, 하층 농민들은 그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채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고, 파산농민도 증가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농촌 내의 변화는 북만주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식민지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요컨대 북만주 농촌에서는 새롭게 개방·개척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토지가 극소수의 특권층에게 헐값으로 拂下되었고, 중국 關內에서 이주해온 빈민들은 대부분 토지 소유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로 인해 북만주 농촌에서는 2/3~3/4 이상의 농가가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토지소유의 불균등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게다가 개척과정에서 행정치안 체계가 완비되지 못하거나 일본의 만주점령으로 초래된 土匪나 항일유격대들의 습격에 대비한 방어시설로서 토벽, 포대, 해자, 자위단, 공동 放牧地 등이 갖추어진 독특한 촌락구조가 형성되었다. 이처럼 극심한 토지소유의 불균등과 치안불안 속에서 북만주의 촌락민들은 공동체적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혹은 치안을 중시한 만주 식민당국의 통치

하에서 중추역할을 하던 대지주나 대농(부농)들의 촌락민들에 대한 영향력이나 위상이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강했고, 반면에 빈농이나 (반)고농들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그들은 많은 제약 속에서 위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만주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면서 농산물의 강제 공출, 생활필수품 및 물가의 통제에 따른 폭등, 戰費 급증에 따른 과중한 조세 부과 등으로 북만주 농민들의 생활은 악화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빈농층은 收支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부채에 시달렸고 농민층 사이의 빈부격차도 극심해졌으며, 농민층의 下降分解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북만주 농촌에서는 ‘개척지’라는 내적 요소와 일본의 ‘식민지’라는 외적 요소가 중첩적으로 작용하면서 타 지역의 농촌사회와는 다른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북만주 농촌만이 지닌 지역적 특성은, 비록 이 글에서는 紙面 關係 상 다룰 수가 없지만, 향후에 다루어질 남만주나 중국의 關內지역, 조선이나 일본과의 비교분석에서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龜淵龍長, 1915, 『一般民地』(下卷), 大連: 滿鐵調査課
- 滿洲國經濟部 編, 1941, 『第十次稅務統計年報』(1941年版)
- 滿洲國國務院總務廳主計處 編, 1944, 『康德十年 財政統計』(1932~1943年版)
- 滿洲國軍政部顧問部 編, 1937, 『國內治安對策の研究』, 발행지 미상: 同顧問部
- 滿洲國民政部警務司 編, 1935, 『保甲制度特別工作概況』, 新京: 滿洲國民政部警務司
-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1971, 『滿洲國史』(各論) 上卷, 東京: 滿蒙同胞援護會
- 滿洲國實業部産業調査局 編, 1936,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査 戶別調査之部』(第一~四分册), 新京: 同調査局
- 滿洲國實業部産業調査局 編, 1937, 『租稅公課篇--北滿·南滿農村實態調査報告書--』, 新京: 同調査局
-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6, 『農村實態調査報告書 戶別調査之部』(産調資料 1), 第三分册, 新京: 同調査局
-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7,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 雇傭關係并に慣行篇』(産調資料 45-5), 新京: 同調査局
-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7, 『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 土地關係并に慣行篇(補遺)-齊北·濱北兩沿線地方十六縣』, 新京: 同調査局資料科
-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7, 『農家の負債並に貸借關係篇--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資料45-6), 新京: 同調査局
-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7, 『農業經營篇--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資料45-3), 新京: 同調査局
-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7, 『農村社會生活篇--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資料 45-9), 新京: 同調査局
-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7, 『土地關係並に慣行篇--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資料45-8), 新京: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 編, 1938, 『農家の負債並に貸借關係篇(南滿の部)--康德三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資料45-15), 新京: 同調査局
- 滿洲國實業部臨時産業調査局資料科 編, 1937, 『農業經營續篇--康德元年度農村實態調査報告書』(産調資料45-7), 新京: 同調査局
- 滿洲國總務廳 編, 1938, 1941, 『滿洲帝國統計月報』(1937年版), (1940年版)
- 滿洲國總務廳 編, 1943, 『省地方豫算概要』, 新京: 同總務廳
- 滿洲國治安部警務司 編, 1942, 『滿洲國警察史』 上卷, 新京: 滿洲國治安部警務司
- 滿洲農産公社理事長室調査科 編, 1942, 『康德八年度 主要農産物生産費に關する調査報告

書』, 新京: 同調査科

滿洲事情案內所 編, 1943, 『滿洲の農民生活-農村實態調査報告-』, 新京: 滿洲事情案內所
 滿洲中央銀行 編, 1943, 『康德十年豫算表』

滿洲興業銀行調査課 編, 1941, 『滿洲に於ける農業統制』, 新京: 滿洲興業銀行調査課

滿鐵調査部 編, 1942, 『北滿農業機構動態調査報告』第1編, 東京: 博文館

滿鐵調査部 編, 1942, 『北滿農業機構動態調査報告』第2編, 東京: 博文館

望奎縣地方志編纂委員會 編, 1989, 『望奎縣志』, 望奎: 望奎縣人民政府

北滿經濟調査所 編, 1940, 『北滿農家經濟調査報告(其ノ二)』(謄寫本), 北滿調査特第三十一號, 同調査所

斯波義信 編著, 2012, 『中國社會經濟史用語解』, 東京: 財團法人東洋文庫

孫邦 主編, 1993, 『偽滿史料叢書 經濟掠奪』,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永富直明, 1936.8, 『保甲制度論(二)』, 『民政部調査月報』第1卷 第8號

中央檔案館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合編, 1993,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 偽滿憲警統治』, 北京: 中華書局

中央檔案館中央檔案館·中國第二歷史檔案館·吉林省社會科學院 合編, 1994, 『日本帝國主義侵華檔案資料選編 東北經濟掠奪』, 北京: 中華書局

2. 연구서

姜念東 等 編, 1980, 『偽滿洲國史』,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高承濟, 1973, 『韓國移民史研究』, 서울: 장문각

關口壽一, 1942, 『滿洲經濟十年史』, 新京: 自信社

權哲男, 2012, 『偽滿洲國農業經濟分析』, 延吉: 延邊大學出版社

金穎, 2004, 『近代 滿洲 벼농사 발달과 移住 朝鮮人』, 서울: 국학자료원

滿洲國史編纂刊行會 編, 1971, 『滿洲國史』(各論) 上卷, 東京: 滿蒙同胞援護會

梶原子治, 1942, 『滿洲に於ける農地集中分散の研究』, 新京: 滿洲事情案內所

朴永錫, 1979, 『萬寶山事件』, 서울: 아세아문화사

山室信一 著, 윤대석 옮김, 2009,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서울: 소명출판사

山室信一, 1993, 『キメラ: 滿洲國の肖像』, 東京: 中央公論社

山田 昭次, 1978, 『滿洲移民』, 東京: 新人物往來社

孫春日, 1999, 『만주국의 在滿韓人에 대한 土地政策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왕성진 지음, 이은형 옮김, 2006, 『중국 동북지역 이민사: 만주국시기 일본 제국주의의 이민침략』, 서울: GCI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柔島節郎, 1979, 『滿洲武裝移民』, 東京: 教育社

유지원 외, 2011, 『이민과 개발: 한중일 3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尹輝鐸, 1996, 『日帝下 滿洲國 研究: 滿洲抗日武裝鬪爭과 治安肅正工作』, 서울: 일조각

- 윤휘탁, 2013, 『만주국: 식민지적 상상이 잉태한 ‘복합민족국가’』, 서울: 혜안
- 李淑娟, 2014, 『日本殖民統治與東北農民生活(1931~1945년)』,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이훈구, 1979, 『滿洲와 朝鮮人』, 서울: 成進文化社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범월(犯越)과 이산(離散): 만주로 건너간 조선인들』, 인천: 인하대학교출판부
- 中見立夫 外, 『特輯滿洲とは何だったのか』, 『環: 歴史環境文明』 vol.10 2002 Summer
- 中兼和津次, 1981, 『舊滿洲農村社會經濟構造の分析』, 東京: アジア政經學會
- 淺田喬二・小林英夫 編, 1986, 『日本帝國主義の滿洲支配—15年戰爭を中心に—』, 東京: 時潮社

3. 연구논문

- 高嵩峰・王恩寶, 2014, 『日本侵華期間對東北農村勞動力的掠奪及其特點』, 『黨政干部學刊』 2014年 8期.
- 孔艷波, 2009.12, 『日本“滿洲移民”政策對中國東北移民活動的影響』, 『日本研究』 2009年 第4期
- 譚忠艷, 2017.7, 『偽滿時期日本對吉林地區土地資源的掠奪』, 『北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7年 第4期
- 劉浩, 2008, 『論解放前後東北土地占有關係的變革及其積極作用』, 『史學集刊』 2008年 第3期.
- 李淑娟, 2005, 『日偽統治時期東北農村社會結構的殖民地化』, 『學習與探索』 2005年 第3期.
- 李淑娟・王鶴, 2006.8, 『日偽統治時期日本對東北棉花的統制與掠奪』, 『黑龍江社會科學』 2006年 第4期
- 李慧娟・畢洪娜, 2011, 『偽滿後期的農業掠奪政策及危害』, 『安徽農業科學』 2011年 第13期.
- 馬玉良・孔艷波, 2004.7, 『近年來對日本向中國東北移民問題的研究綜述』, 『東北史地』 2004年 第7期
- 馬偉, 2013.1, 『從東北日本移民看偽滿時期的土地關係及其社會影響』, 『長白學刊』 2013年 第1期
- 安曉峰, 2009.10, 『偽滿時期日本在東北的大豆掠奪』, 『傳承』 2009年 第20期
- 王洋洋, 2014.2, 『近代以來東北農業研究綜述』, 『黑龍江史志』 2014年 第4期
- 王一江, 2007.12, 『日偽統治時期勞工徵集對東北農村經濟的影響』, 『黑龍江社會科學』 2007年 第6期
- 于春英, 2009.9, 『偽滿時期東北地區糧食生產變遷的研究』, 『中國農史』 2009年 第3期
- 于春英, 2011, 『偽滿時期東北地區小農經營的發達及原因』, 『北方文物』 2011年 第4期
- 윤휘탁, 2001.4, 『滿洲國 農村의 社會像: ‘複合民族構成體’의 視覺에서 본 植民地 農村

- 의 斷想, 1932~1945』,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27집
- 尹輝鐸, 2001.12, 『‘邊地’에서 ‘內地’로: 中國人 移民과 滿洲(國)』, 『中國史研究』 제16집
- 윤휘탁, 1991.1, 『1930年代(1934~38) 北滿洲 農村의 社會構成』, 『東洋史學研究』 제35집
- 윤휘탁, 2017.12, 『만주국 시기 北滿洲의 농업경영과 농민층의 변화』,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93집
- 윤휘탁, 1995.9, 『‘滿洲國’ 時期 日帝의 治安肅正工作이 農民에게 미친 影響과 그 結果』, 『歷史學報』 제147집
- 李淑娟, 2005, 『日僞統治時期東北農村社會結構의 殖民地化』, 『學習與探索』 2005年 第3期
- 張占斌, 1986, 『日僞時期東北無地農戶狀況初探』, 『北方文物』 1986年 第3期
- 趙朗·孟月明, 2011.6, 『僞滿時期遼寧日本移民狀況調查與研究』, 『蘭台世界』 2011年 第13期
- 朱艷·李國華, 2008.5, 『僞滿時期日本對東北的糧食掠奪』, 『遼寧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8年 第3期

투고일 : 2017년 11월 18일, 심사완료일 : 2017년 12월 17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8일

■ Abstract ■

The Actual Condition of Villages and Farmers' Life
in the Northern Area of Manchukuo(滿洲國)

Yoon, Hwy-Tak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northern part of Manchuria was opened and exploited relatively late. During the pioneering process, land was sold at a low price to a small number of privileged people. On the other hand, poor peoples who migrated from northern China had no opportunity to own land. Whereby, very few landowners or rich farmers owned most of the land. Unlike that, about 70% of farm households did not own any land. As a result, unequal land ownership has appeared in rural areas in northern Manchuria. In addition, there were frequent assaults by local predatory troops(土匪) and anti-Japanese guerrillas because in the northern part of Manchuria, the police administration system was not properly equipped. In the rural areas of northern Manchuria, there were defense facilities such as a wall and a turret. The farmers of the villages were living a community. In the villages, landowners and peasants with large land and security positions had great influence. In the villages, the influence and status of the landowners and rich peasants were stronger than other regions like the southern Manchuria, northern China region. On the other hand, poor farmers and agricultural workers were living anxious lives under various constraints and poverty. After the establishment of Manchukuo(滿洲國),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forcibly bought agricultural products cheaply and controlled materials and necessities. Such colonial policies have spurred agricultural products, prices and wages. Also, as the war spread, Japanese colonial authorities imposed a lot of taxes to cover the cost of war. As a result, the life of farmers in northern Manchuria was getting worse. Poor farmers and agricultural workers suffered

from debt, and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has also become extreme. And the lower-class farmers were gradually falling down. In conclusion, in rural areas in northern Manchuria, the internal elements of pioneering and colonial external elements interacted with each other and showed unique regional characteristics different from other regions.

Key words : northern Manchuria, rural, land ownership, village, rural social composition, income and expenditure, the life of farmers

